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인 쇄 2006년 12월 22일

발 행 2006년 12월 22일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경제연구센터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4 (팩시밀리) 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5,000원

© 통일연구원, 2006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 최수영. — 서울 : 통일연구원, 2006
p. ; cm. — (연구총서 ; 06-03)

참고문헌수록

ISBN 89-8479-371-X 93340 : ₩5000

522.0911-KDC4

388.109519-DDC21

CIP2006002838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서 론	1
II. 북한 농업부문에서의 개혁조치	5
1. 농업개혁 조치 개관	7
2. 생산: 집단영농의 비효율성 개선	10
3. 분배: 영농 인센티브 강화	13
4. 가격·유통: 국정가격 현실화, 종합시장 도입	17
III. 개혁조치에 따른 북한 농업부문의 변화	23
1. 생산부문에서의 변화	25
2. 분배부문에서의 변화	30
3. 가격·유통부문에서의 변화	35
IV. 중국과 베트남의 농업개혁 사례	41
1. 중국의 농업개혁	43
2. 베트남의 농업개혁	56

V. 북한 농업개혁의 방향과 과제	65
1. 북한 농업개혁의 방향	67
2. 농업개혁의 과제	72
VI. 결 론	85
참고문헌	91
최근 발간자료 안내	95

표 목 차

<표 II-1> 북한의 농업개혁 조치 주요 내용	9
<표 II-2> 새로운 분조관리제와 과거 분조관리제 비교	15
<표 II-3> 7·1조치에 따른 농산물 국정가격(kg당) 인상	18
<표 III-1>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	25
<표 III-2> 북한의 농산물 시장가격 변화	36
<표 IV-1> 인민공사의 해체 추이	46
<표 IV-2> 중국 농업부문 생산책임제 보급상황	50
<표 IV-3> 국가 수매가격 추세	53
<표 IV-4> 농업의 생산주체	64

I

서론

지난 50년 이상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경제를 운영해 온 북한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를 경험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은 경제난 해소와 경제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전환을 모색해 왔다. 북한은 2002년 7월 1일 ① 물가(25배)·임금(18배)·환율(70배) 인상, ② 기업경영 자율권 확대, ③ 영농인센티브제 강화, ④ 저가 배급제의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조치)를 단행하였다.

7·1조치 이후 북한은 개방지역 확대 및 시장기능 도입 등 추가적인 경제개혁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2002년 하반기에 북한은 「신의주특별행정구」(2002.9), 「금강산관광지구」(2002.10), 「개성공업지구」(2002.11)를 특구로 지정하였다. 2003년 3월에는 농민시장의 종합시장 개편, 국영상점 경영권의 기관·기업소 이양, 개인의 서비스업(식당·PC방) 허용 등 상업개혁을 실시하였다. 2004년 1월부터는 농업부문에 ‘가족단위 영농’을 일부 도입하고 공업부문에 ‘기업개혁’ 조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개혁 추진으로 북한은 농업·경공업 등 일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상거래가 활성화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지만 물자의 공급부족에 따른 인플레이션 심화 및 환율 폭등 등의 부작용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강·절도와 같은 범죄행위의 증가 및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등 자본주의적 병리현상도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2000년대에 추진하고 있는 경제부문에서의 새로운 조치들이 경제관리에서의 일대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부문에서는 곡물생산·분배에 대한 국가의 책

임을 축소하고, 협동농장의 자율권 강화 및 영농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집단 영농의 틀을 유지한 채로 농업부문에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농업개혁 경험은 향후 북한의 농업개혁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한다. 두 국가 모두 기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고수하면서 점진적으로 농업개혁을 추진해 왔다. 북한이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하면서까지 경제부문에서의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과 베트남의 농업부문에서의 개혁 경험은 북한이 답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두 국가는 농업개혁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이 글은 7·1조치 이후 북한 농업부문의 변화와 개혁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지금까지 북한이 농업부문에 도입한 개혁 조치들을 다루고 있다. 제3장은 이런 개혁 조치에 따른 북한 농업부문에서의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제4장에서 중국과 베트남의 농업개혁 사례를 소개하고, 제5장에서 북한 농업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맺음말로 결론을 대신하고 있다.

II

북한 농업부문에서의 개혁조치

1. 농업개혁 조치 개관

북한에서 2002년 7·1조치 이전까지 개혁다운 개혁조치가 취해진 적은 거의 없었다. 경제의 다른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업부문에서도 개혁이라 불려도 좋을 그런 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제고 및 자율성 확대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혁적인 노력은 19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7·1조치 이전 농업부문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1966년 도입된 분조관리제를 대폭 개선한 것이다. 북한은 농장조직의 최하위단위인 분조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기존의 분조관리제를 손질해서 1996년부터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1999년 1월에는 벼·옥수수 위주의 재배에서 각 협동농장의 실정에 따라 감자·약초 재배도 허용하는 등 농장에 作物선택권을 일부 부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농업부문에서의 개혁은 7·1조치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가족단위로 분조 구성을 확대하고 일부지역에서는 농지를 분조에게 시범적으로 분배하였다. 협동농장의 연말 분배시 적용하는 실적평가단위를 작업반에서 분조로 전환하였다. 벼를 제외한 나머지 작물에 대해서 작물선택권을 확대하였다. 토지를 3부류(협동농장 토지, 기관·기업소 부지, 개인경작지)로 구분하고 토지사용료를 차등해서 부과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인이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종전 30~50평에서 400평까지 허용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협동농장 토지를 개인에게 할당해 경작토록 하는 개인경작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7·1조치를 계기로 전반적인 물가와 임금이 상향조정되면서 곡물의 수매가와 공급가도 대폭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국영유통망을 통한 고가 매입, 저가 공급의 2중 곡가제는 사라지고 수매가의 1/10 수준에서 거의 무상으로 공급하던 식량배급제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농장의 경우 종전까지 수확량의 70~80%를 국가에 납부하였으나 토지사용료와 생산비 명목으로 50~60%만 납부하도록 하여 자율 처분량이 늘어났다.

유통부문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관측되고 있다. 7·1조치에 따라 기본적으로 농산물 국정가격은 시장가격에 근접한 형태로 인상되면서 현실화되었다. 북한이 시장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개편하면서 시장을 통한 농산물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농업부문에서의 개혁조치에 따라 전반적인 농업생산의 증가 추세는 나타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부작용도 매우 심각하다.

<표 II-1> 북한의 농업개혁 조치 주요 내용

구분	조치	주요내용
곡물 생산	분조관리제 개선	- 가족단위(2~5세대) 분조 구성을 확대 - 일부지역에서 농지를 시범적으로 분조에 분배
	실적분배 강화	- 협동농장의 연말 분배시 실적평가단위를 작업반(80~120명)에서 분조(10~25명)로 전환
	작물선택권 확대	- 벼를 제외한 나머지 재배 작물에 대해 선택적으로 확대
	토지사용료 징수(2002.7)	- 협동농장 토지, 기관·기업소 부지, 개인경작지(뚝기밭) 등 3부류로 구분하고 차등(최저 53전~최고 60원) 부과
	개인경작지 확대	- 개인이 임의로 개간·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종전 30~50평에서 400평(뚝기밭)으로 확대
	개인영농제 시범실시	- 일부 지역(함북 회령·무산 등)에서 협동농장 토지를 개인에게 할당·경작토록 하는 개인영농제 시범 실시
곡물 수매	2중 곡가제 폐지(2002.7)	- 곡물의 고가 수매, 저가 공급 폐지 - 쌀 수매가(40원/kg)와 공급가(44원/kg)를 대폭 인상하여 현실화
	국가 납부량 축소	- 농장 자율 처분량 증가: 수확량의 70~80%를 국가에 납부했으나 토지사용료와 생산비 명목으로 50~60% 정도만 납부
곡물 분배	식량배급제 폐지	- 수매가(쌀: 82전/kg)의 1/10수준에서 거의 무상(쌀: 8전/kg) 공급하던 식량배급제 폐지
	식량 공급대상 축소	- 체제 보위계층에서는 기준량(700g)을, 일반 주민에게는 기준량의 절반(300g)을 공급 - 2004년 3월부터는 공급대상 기관·기업소를 더욱 축소, 자력조달을 강화

출처: 김영윤·최수영,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서울: 통일연구원, 2005.3), p. 47.

2. 생산: 집단영농의 비효율성 개선

가. 집단주의 완화, 책임영농 유도

북한은 「농업법」을 개정(2002.6)하는 한편 분조 규모를 축소하고 협동농장에 세부 생산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하는 등 농장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있다. 농업생산 증대를 위해 작업반 우대제를 삭제하고 분조관리제 중심의 관리운영으로 전환(「농업법」 제72조)하였다. 협동농장의 기초 생산단위인 분조의 인원을 축소(기존의 10~25명에서 새로운 분조관리제에서는 7~8명, 이를 다시 4~5명의 가족단위로 시범 실시)해 집단주의를 완화하고 책임영농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벼를 제외한 나머지 작물을 협동농장이 선택하게 하는 등 농장의 작물 선택권도 확대해 나갔다.¹

북한은 사경지(개인경작지)를 확대하고 토지사용료를 신설하는 등 농지제도를 일부 개편하였다. 개인경작지 허용 면적을 기존의 30~50평(1958년 지정)에서 7·1조치 이후 400평(폐기밭)으로 확대하고 기관·기업소별 부업지를 소속 세대별로 분배하였다. 가동이 중단된 공장의 유희인력을 활용하고자 노동자들에게 토지를 분배하여 경작토록 조치하였다.

개인경작지의 확대는 함경도 회령 및 무산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텃밭(폐기밭)의 확대에 의한 개인의 증산된 농산물은 사적 유통체계인 농민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내륙 산간지대를 중심으로 텃밭 확대의 가능성은 있으나, 텃

¹ 2003년 9월 국제구호단체인 카리타스 홍콩지부의 카티 젤웨거 국장은 “북한의 일부 농장은 과거와 같이 당국의 지시대로 강냉이만 심지 않고 자신들이 재배작물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하고 있다.

밭 경작면적의 확대는 실질적으로 개인영농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에도 공식부문으로 흡수되어 생산물의 일정 비율을 세금 형태로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은 농지를 ① 협동농장 토지, ② 기관·기업소 부업지, ③ 개인경작지 등 3부류로 구분하고 토지사용료를 차등 부과(평당 최저 53전~최고 60원)하고 있다. 토지사용료는 평당 1부류(농장)는 54전~36원, 2부류(기관·기업소)는 88전~60원, 3부류(개인경작지)는 12원이다.

나. 개인경작 시범 실시

집단영농의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생산방식에서의 변화는 일부 협동농장에서 포전담당제(가족단위 영농)를 시범 실시하고 있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2004년 1월 ‘집단영농 방식 완화 및 가족영농 시범 실시’를 결정하고, 뒤이어 황해북도 수안 및 함경북도 회령 등의 일부 협동농장을 선정해 분조를 가족단위(2~5가구)로 재편하고 농지를 할당하여 경작토록 조치하였다. 2004년 12월 김용술 무역상 부상은 “협동농장에 분조를 보다 작게 하거나 포전담당제를 조직할 권한을 부여했음”을 밝히고 있다.

개인경작의 모범사례로써 황해남도 룡연군 몽금포협동농장에서는 ‘고정포전’(개인경작지) 관리방식을 시행한 결과 퇴비(거름) 생산량이 크게 증가해 옥수수가 증산되었다고 한다.² 몽금포협동

² 북한의 여성 월간지 『조선여성』, 2002년 8월 인용 보도, 『연합뉴스』, 2002년 9월 25일.

농장에서는 농장 여맹원 1인당 밭 300평을 배정하고 경쟁을 유도한 결과 가족들까지 동원되어 자신이 관리하는 밭을 개량하기 위해 객토작업을 하는 등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는 광경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북한의 협동농장에서는 농장이 보유한 토지를 개인에게 빌려주고 세금을 받는 ‘개인경작제’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북지원단체인 ‘좋은벗들’에 따르면 함경북도 온성군과 새별군 등 일부 지역에서 2003년 말부터 2004년 초에 걸쳐 협동농장에서 개인에게 경작지를 분배하고 상중하로 나눠 세금을 받는 개인경작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³ 북한 당국이 작년(2003년) 가을에 미리 토지세를 거두고 올해(2004년) 3월부터 꾸준히 직장에 출근하는 근로자에 한해 1인당 300평씩 유휴농경지를 분배했다는 것이다.

연변과학기술대학 김진경 총장은 “지난 1일(2004년 3월)부터 북한 당국에서 토지를 개인이 임대할 수 있도록 했는데 북한주민들은 농기구도, 비료도 살 돈이 없는데다 협동농장 시스템에 익숙해 호응이 저조하다”고 말했다.⁴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³ 좋은벗들 소식지(www.goodfriends.or.kr)에 따르면 “온성군 상화 탄광이 운영하는 집단농장은 1인당 120평씩 밭을 나눠주었으며 온성군 종성에 있는 ‘4·25 담배농장’에서도 3~4가구를 1개 조로 묶어 토지를 분배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한다. 한편 좋은벗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금은 가장 좋은 토지를 기준으로 북한 돈으로 평당 12원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개인에게 분배한 토지 면적은 협동농장마다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이 토지를 받더라도 소나 농기구, 비료가 없어 경작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놓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탈북자들은 함경북도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개인경작제가 전국단위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는 증언을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04년 12월 5일.

⁴ 연변과학기술대학 김진경 총장이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베를린 자유대 통일포럼에서 주장한 내용, 『연합뉴스』, 2004년 3월 15일.

“3월 1일에 구체적으로 무슨 조치가 실시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도 “북한이 협동농장 분할 임대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는 정황은 여러 차례 포착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 조치가 북한 전역에서 실시됐는지 아니면 시범적으로 실시됐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⁵

이와 같이 일종의 ‘가족영농제’라 할 수 있는 개인경작의 시범 실시, ‘가족청부제’라 할 수 있는 협동농장 토지의 개인 임대 등은 북한 농업분야에서도 자본주의식 이윤 추구하고 경쟁원리가 실험적으로 도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도 개혁·개방 초기에 ‘농가청부제(農家請負制)’를 채택하여 토지와 자재를 농민에게 임대함으로써 농민의 생산의욕을 자극, 농업증산에 전기를 마련하였다. 협동농장에서 개인경작 및 개인에 대한 토지 임대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7·1조치 이후 농민에 대해서도 실적에 따른 분배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3. 분배: 영농 인센티브 강화

가. 분조관리제 확대 실시

북한은 1996년 3월 분조관리제를 개선하여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도입,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였다. 새로운 분조관리제는

⁵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협동농장 토지에 대한 개인임대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농민이 비료나 농기계를 개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렇지만 현재 북한사회의 변화로 볼 때 이 같은 중국식 개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조구성을 기존의 老·壯·靑 배합(10~25명)에서 가족단위(7~8명)로 변경하고 생산계획을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면서 계획을 초과하여 생산한 초과생산물에 대해 자유처분을 허용하였다. 분조관리제는 협동농장의 말단 영농단위인 분조별로 농경지와 노력·생산도구 등을 받아 농사 후 계획수행 정도에 따라 11~12월 중 결산분배를 받는 제도로 1966년 초에 도입된 제도이다.

그렇지만 이후 새로운 분조관리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보고나 조짐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새로운 분조관리제는 실험적으로 도입된 이후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이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동기유발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분조관리제 하에서도 목표생산량 책정 수준은 여전히 높았으며 농업생산을 위한 물적 토대가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분조가 초과 생산을 실현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다.

한편 2002년 초부터 신의주와 온성에서는 3~4가구를 한 분조로 묶어 농사를 짓게 하고 목표생산량을 초과 달성한 분조에 대해서는 자체 분배토록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다시 분조원 규모를 4~5명의 가족단위로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⁶ 이와 같이 북한은 1996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유명무실해진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전국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확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1조치 이후 새로운 분조관리제의 전면적인

⁶ 권태진, “북한의 농업실태와 농업발전 전략,” 『북한의 경제개혁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농업협력방향』(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 국제세미나 자료집, 2003. 3. 11), p. 34.

시행은 협동농장 농민에 대한 분배를 실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표 II-2> 새로운 분조관리제와 과거 분조관리제 비교

	과거 분조관리제 (1966년~1995년)	새로운 분조관리제 (1996년 이후)
분조구성	- 농장원들의 능력과 요구를 고려하여 老·壯·靑을 배합하는 원칙에서 10~25명으로 구성	- 주로 가족, 친척단위를 위주로 7~8명으로 구성
생산계획	- 매년 국가적인 생산목표에 따라 각 농장들에 지표를 설정	- 지난 3년간의 평균 수확고와 1993년 이전 10년간의 평균 수확고의 평균치
초과분처분	- 초과생산물은 국가에서 수매(쌀 60전/kg, 옥수수 50전/kg)	- 초과생산물은 현물로 농장원(분조)에게 분배되고 자유롭게 처분

출처: 『조선신보』, 1997년 7월 16일.

나. 실적분배원칙 확대

북한의 협동농장들은 7·1조치 이후 실적분배원칙을 하급 조직까지 확대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노동력 지원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⁷ 『조선신보』는 7·1조치로 ‘일한 만큼, 벌어들인 만큼 분배한다’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이 정착돼 연말 결산분배에서 최하위단위인 분조도 생산실적에 따라 분배를 받고 있으며 분조 간에도 분배 몫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7·1조치 이후 국가에서 채소와 같은 생산품을 질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 수매하면서 농민들이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품질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⁷ 『조선신보』의 자매지인 조총련 월간지 『조국』, 2004년 2월 인용, 『조선신보』, 2004년 1월 23일.

7·1조치 이전에도 각 협동농장마다 1년간 총생산량에서 국가 납부금(세금)과 생산비 등을 공제한 후 생산실적에 따라 작업반 별로 연말에 분배 몫을 배분해왔으나 분조에 대해서는 ‘평균주의 원칙’을 견지했었다. 따라서 협동농장원의 경우, 농장에 나가 일을 잘했건 못했건, 가동일수만 보장되면 협동농장은 1년 식량을 가족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완전히 지급했었다. 그러나 결산분배 방법이 바뀔에 따라 생산의욕이 증진되고 생산품의 질을 높이려는 의식이 크게 높아져서 농민들은 국가에 납부하는 토지사용료와 물, 전기, 비료, 농약과 지원노력 등 각종 생산비용을 줄여 분배 몫을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북한은 협동농장의 연말분배시 실적평가 단위를 작업반(80~120명)에서 분조로 전환, 농민들의 경쟁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조총련 월간지 『조국』에 따르면 “경제개혁조치 이전에는 작업반별로 분배함으로써 분조들의 몫이 똑같았으나 지금은 분조별로 분배해 분조 간에도 차이가 발생하며, 2003년 청산협동농장의 경우 현금이 1인당 평균 6만원, 가장 많이 받은 분조에서는 12만원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⁸

동시에 국가수매량을 축소하여 농민들의 생산동기를 유발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과거 수확량의 70~80%를 국가에 납부하였으나 이제는 토지·관개용수·전기 사용료 및 생산비 명목으로 50~60%정도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협동농장이 자율 처분하고 있다. 청산협동농장 최영호 부위원장은 2003년 결산분배 결과 “토지사용료와 생산비용이 총수입의 약 50%를 차지”하였다고 전하고 있다.⁹

⁸ 『조국』, 2004년 2월.

4. 가격·유통: 국정가격 현실화, 종합시장 도입

가. 국정가격의 이중가격제 폐지

북한은 7·1조치에 따라 국정가격인 농산물의 수매가격과 판매가격(배급가격)을 대폭 인상해 농산물 가격을 현실화하였다. 이러한 가격 현실화를 통해 북한은 식량 무상 배급제 및 2중 곡가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여 재정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과거에는 곡물을 고가(쌀: 82전/kg)에 수매하여 저가(8전)로 공급해 왔지만 2002년 7월 이후에는 수매가(40원)에 수송비를 더하여 대폭 인상된 가격(44원)으로 공급하고 있다.

7·1조치에 따라 쌀의 수매가는 kg당 약 50배(82전→40원), 주민 공급가는 550배(8전→44원) 인상되었다. 옥수수의 수매가는 kg당 60전에서 20원으로 33배 인상되었고, 판매가는 6전에서 24원으로 400배 인상되었다. 곡물 수매가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쌀의 경우 판매가(44원)와 수매가(40원) 간에 큰 차이가 없게 되었고, 옥수수도 판매가(24원)과 수매가(20원) 사이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7·1조치 이전 곡물의 경우 수매가와 판매가 사이에는 보통 10배 정도의 차이가 있었으나 7·1조치 이후에는 그 차이가 10~20% 정도로 줄어들었다.

⁹ 『조선신보』, 2004년 1월 23일.

<표 II-3> 7·1조치에 따른 농산물 국정가격(kg당) 인상

구 분		인상 전	인상 후	인상폭
쌀	수매가	82전	40원	약 50배
	판매가	8전	44원	550배
옥수수	수매가	60전	20원	33배
	판매가	6전	24원	400배
콩	판매가	8전	40원	500배
돼지고기	판매가	10원	110원	11배
된장	판매가	20전	17원	85배
간장	판매가	20전	16원	80배

출처: 북한 내부자료, 조선로동당출판사, “가격과 생활비를 전반적으로 개정한 국가적 조치를 잘 알고,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앞당기자(2002년 7월),” 『KDI 북한경제리뷰』 제5권 제1호(2003.1), p. 41; 일본 방문 중 김용술 북한 무역성 부상이 비공개 세미나(2002년 9월 2일)에서 강연한 내용, “북한 경제정책 설명,” 『KDI 북한경제리뷰』 제4권 제10호(2002.10), p. 46; 『조선신보』, 2002년 7월 26일.

북한은 농산물(특히 곡물)의 수매가격을 현실에 맞게 인상함으로써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농산물(축산물 포함) 수매가격의 대폭 인상은 농민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농민들의 생활과 농업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조건이 개선된 것이다. 곡물(쌀, 옥수수)의 수매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농민들은 수매를 회피하고 농민시장에 곡물을 불법으로 유통시킬 이윤이 다소간 줄어들게 되었다. 수매가의 대폭 인상으로 이제까지 국가가 공급해주던 영농자재는 종전처럼 “공짜”가 아니라 원가를 반영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은 공적 유통부문인 국영상점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배급가격(국정가격)을 농민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에 상당히 근접한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였다.¹⁰ 쌀의 국정가격(판매가)은 kg당 종전 8전에서 44원(550배), 옥수수는 kg당 6전에서

24원(400배), 콩은 kg당 8전에서 40원(500배)으로 각각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식량공급소에서도 곡물(쌀, 옥수수)을 충분히 살 수 있다면 굳이 농민시장에서 구입하는 것과 가격 면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되었다.¹¹ 돼지고기(생체)의 경우 kg당 10원에서 110원으로 11배 인상하였다.

한편 북한은 상품가격을 고정시키지 않고 수급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계속 조절하도록 하였다. 연료, 전력, 자재 등 생산원가에 직접 반영되는 가격, 그리고 쌀값이나 주택비 등 인민들의 생계와 직접 관련되는 가격들은 7·1조치 이후 일정 기간에는 초기에 설정한 그대로를 유지하여 일체 변동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쌀값은 지역에 따라서 kg당 44원에서 46원 등 조금씩 편차를 보이고 있다. 2003년 말 북한에 지원된 쌀이 46원에 판매(유상분배)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실제 이들 품목의 국정가격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다.

나. 종합시장의 도입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주의 국제시장이 사라지고 국내 경제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유통부문은 점차 약화되어 왔다. 반면 농민시장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개인 상업은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¹⁰ 7·1조치 당시 농민시장에서의 쌀 가격은 80원, 옥수수는 57.5원, 돼지고기는 290원 정도였다.

¹¹ 북한은 쌀 가격이 인상됐지만 식량을 전인민에게 골고루 나누기 위해 배급표를 발급하고 인상된 가격에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노임을 보장했기 때문에 식량배급제가 유지될 것이라고 하였다.

상황에서 상업유통부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은 급격히 위축되었고 오히려 사경제부문이 국가의 계획경제부문을 압도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국가배급체계가 그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주민들은 부족한 식량과 생필품의 대부분을 농민시장과 같은 사적 상업유통망을 통해 조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은 2003년 3월부터 기존의 농민시장을 종합소비품 시장인 종합시장으로 개편하기 시작하였다. 7·1조치를 통해 저가의 배급제를 사실상 포기함에 따라 주민들은 그동안 국가로부터 배급받아 소비했던 일부 생필품조차 농민시장에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농민시장의 종합시장으로의 개편은 7·1조치 이후 사적 상업유통망에 대한 주민들의 의존이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새로 조성된 종합시장에서는 과거 농민시장에서 금지되었던 농산물(곡물)과 공산품 등 거의 모든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식량(곡물)을 비롯한 대부분의 소비재가 유통되고, 과거 농민시장에서는 불법이었던 공산품의 거래가 합법화되었다. 이것은 북한이 시장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사회주의 상업유통의 일부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시장에서는 밀수품 및 공식(계획)부문에서 불법적으로 유출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그 출처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공급 원천의 합법, 불법을 막론하고 모든 상품이 거래된다고 볼 수 있다.

종합시장은 2003년 12월 현재 북한 전역에 300~350개 정도가 개설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농민시장의 수는 평양에 19개 행정구역 중 18개 구역에 최소한 1개, 각 군 단위에 1~2개, 시 단위에 3~5개가 개설되어 전국적으로 300~350개가 있는 것으로 추

정되었다. 2003년 말 현재 평양에만 38개의 종합시장이 있으며 곧 42개로 될 것이라고 한다.

종합시장은 국영기업소 지배인에 의해 운영되며 수익에 따라 국가납부금을 내는 또 다른 형태의 국영기업소다. 종합시장 내의 개별 매대에서는 소득에 따라 국가납부금과 각 매대당 40~60원의 시장사용료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다. 통일거리시장(평양시 낙랑구역)의 경우 6,000㎡에 1,400여개의 매대가 운영 중이고, 종합시장 운영에 고용된 자체 종업원 수는 36명 정도이다. 과거 농민시장에서는 개별 주민들만이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었으나, 종합시장에서는 국영기업소와 협동단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어 통일거리시장 매대의 5%는 공장과 기업소 몫으로 할당되고 있다.

III

개혁조치에 따른 북한 농업부문의 변화

1. 생산부문에서의 변화

가. 영농의욕 제고에 따른 생산 증대

북한 농업의 문제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는 식량난으로 지적되는 식량부족 현상이다. 지난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북한의 심각한 식량부족 현상은 1995년부터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곡물(식량) 생산량은 1995년에 급격히 감소하여 1997년까지 연간 350만 톤을 하회하였다. 1995~1997년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최소소요량에도 매년 170만 톤 정도 모자라서 국제사회의 긴급 식량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북한의 식량난은 최고조에 달하였다.¹²

<표 III-1>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

(단위: 천 톤)

구 분	1995/96	1997/98	1999/00	2001/02	2003/04	2005/06
국내생산량	3,451	3,489	4,222	3,946	4,252	4,540
최소소요량	5,145	5,206	5,261	5,307	5,388	5,477
부족량	1,694	1,717	1,039	1,361	1,135	937

- 주: 1. 국내생산량: 농촌진흥청 발표자료.
 2. 최소소요량: 식용은 1인 1일 평균 500g 기준,
 기타 소요량은 식용의 30% 기준.
 3. 인구규모: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대전: 통계청, 2005).

¹² 최소소요량은 1인 1일 평균 500g 배급을 기준으로 한 식용소요량과 이 양의 30%로 책정한 기타소요량의 합으로 정의한다. 1인 1일 500g은 북한이 식량 부족시기에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배급목표량이며, 기타소요량 30%는 최근 5년간 FAO/WFP 발표치의 근사치이다.

이후 북한의 곡물생산은 회복세를 보이면서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¹³ 7·1조치 다음 해인 2003년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413만 톤으로 전년 대비 8%, 28만 톤 증가하여 지난 9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곡물 생산량 증가는 양호한 날씨, 국제지원을 통한 비료 사용량의 증가, 병해충 발생의 감소, 개천-태성호 물길공사 완공으로 인한 곡창지대 관개시설의 개선, 전기 공급의 증가로 인한 관개용 양수기 가동 증가, 연료 및 부품 공급증가에 따른 농기계 가동률 상승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4년에도 생산량은 425만 톤으로 전년보다 3% 증산되었다. 영농 조건은 지난해와 유사하였으나 곡물 증산에 성공한 것은 7·1조치 이후 농민들의 영농의욕 제고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¹⁴ 2005년의 곡물생산량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450만 톤을 상회한 454만 톤을 기록하였다.

최근 북한의 곡물 증산은 하드웨어적 요소(비료 등 영농기자재)들의 사용과 활용의 증가가 직접적인 요인임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런 하드웨어적 요소들이 상호 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킨 데는 7·1조치 및 이후 개혁(개선)조치에 따른 농민들의 증산 의욕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¹⁵ 곡물 증산은 전

¹³ 2000년대에 들어서서 농업부문에서는 영농의욕 증대, 토지이용률 제고 등으로 곡물 생산(2001년 395만 톤 → 2002년 413만 톤 → 2003년 425만 톤 → 2004년 431만 톤 → 2005년 454만 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¹⁴ FAO/WFP,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2 November 2004.

¹⁵ “청산리를 비롯한 협동농장들에서도 정보당 67톤의 벼를 생산하던 논에서 100톤 이상을 생산---농민들이 10만원 수준의 분배수입을 실현한 사례도 있다.” “높아가는 일 욕심, 경제에 활력, 7·1 이후 일어난 변화,” 『조선신보』, 2003년 3월 14일; 청산협동농장 최영호 부위원장은 “농장원들은 이전에는 조건

적으로 외적인 긍정적 요인의 확대(증가) 때문만이 아니라 추가적 인센티브의 제공에 따른 농민들의 자발적인 영농의욕이 제고되었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도 농장생산 실적과 분배량이 늘어난 데는 7·1조치에 따른 쌀 수매가 인상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다.¹⁶ 쌀과 옥수수 수매가격은 7·1조치로 인해 각각 50배, 33배 인상되었다. 전반적인 물가가 평균 25배 인상된 것에 비하면 곡물 수매가격은 더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종자, 비료, 농약, 연료, 전기 등과 같은 농업 투입재 가격도 인상되었으나 전반적으로 곡물가격이 보다 높게 현실화됨으로써 농민들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대폭 증가되었다. 이와 같이 곡물(쌀, 옥수수)의 수매가격이 대폭 인상을 함으로써 농민들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었다.¹⁷ 인센티브가 부족한 집단농장체제에서도 농민들이 종전보다 좀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2003년 3월부터 북한 당국이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전환,

이 좋지 않아 농사를 단념했던 토지도 토지사용료를 내는 만큼 효과적으로 이용할 공리를 하게 되었다”(2004년 1월)고 언급하였고, 또한 “남새는 질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져 있고 흠이 너무 많으면 수매가 되지 않으니 질향상을 위해 노력한다”(2004년 2월)고 하였다.

¹⁶ “지난 시기에는 쌀 수매가격이 낮아 농장원들이 협동농장의 농사일에 크게 매달리지 않았고 텃밭경작 등 부업에 더 관심이 컸다. 그러나 수매가 인상으로 수확량과 노력공수(노력점수)에 따라 분배량이 많아져 더 열심히 일하게 됐다.” 『조국』, 2003년 7월.

¹⁷ “2002년 7월 이후 쌀 수매가격을 대폭 높여 농민들에게 많은 분배 몫이 돌아가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 농업생산과 분배에서 가장 앞서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 새로운 수매가격이 제정되면서 농장원들의 노력 열의가 높아졌다. 지난 시기에는 쌀 수매가격이 낮아 농장원들이 협동농장의 농사일에 크게 매달리지 않았고 텃밭경작 등 부업에 더 관심이 컸다. 그러나 수매가 인상으로 수확량과 노력공수에 따라 부업량이 많아져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 노력자가 많은 집에서는 수십만원씩의 현금이 분배됐다. 농민들이 농장 살림살이의 주인이라는 자각과 책임성도 훨씬 높아졌다.” 『조국』, 2003년 7월.

공식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한 것도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자극하고 있다. 시장이 공식화되고 합법화됨에 따라 곡물의 판매 확대 가능성이 커져 농민들의 증산의욕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유통 개혁은 농민들이 자신들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공식적으로 농민들이 종합시장에서 곡물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종합시장이 등장함으로써 농민들의 곡물 판매루트가 확대된 것이다.

나. 농장(농민) 이기주의 발현

7·1조치에 따라 협동농장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자율성의 범위 내에서 농장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지표 및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가격이 대폭 인상됨으로써 협동농장은 생산증대를 위해 영농자재의 확보에 우선 주력해야 하고,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을 통한 영농자재 확보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¹⁸ 또한 농산물의 상대가격 변화를 고려한 생산물(작물)의 구성비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 결국 의무 수매량의 감축 및 자체 처분물량의 비중 증대로 외부 판매처분, 여타 농장·기업소와 물자교류, 공동기금 확충, 농장원(농민) 분배규모 증가 등 생산물의

¹⁸ 사회주의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인민들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특히 농사에 필요한 물과 비료, 영농기구 등이 지난날의 ‘공짜나 같은 가격’이 아니라 ‘적절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7·1조치로 협동농장 농장원에게 토지사용료가 부과되면서 농업생산성이 높아지고 결산분배에서의 ‘평균주의’가 사라지게 되었다. 토지사용료를 내는 것만큼 농장원들은 과거 조건이 좋지 않아 농사를 단념했던 토지도 효과적으로 이용할 공리를 하게 됐다. 경제관리의 개선이 확실히 농산물의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조선신보』, 2004년 1월 2일.

처분에 관한 사항이 더욱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대두된 것이다.

국가의 의무 수매 비중은 감소하고 협동농장의 자체 처분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일부 협동농장의 농민들이 많은 수입을 올리는 데 대해 북한당국은 경계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⁹ 협동농장들이 실리만을 앞세워 수매가격이 높은 작물만 재배하거나 생산하는 편향적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면서 ‘실리’에 대해 “국가적, 사회적 이익을 우위에 놓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속에서 자기 단위, 근로자들의 요구를 다 같이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장들이 자기 이익만을 내세우고 국가적, 사회적으로 절실한 의의를 가지는 농업생산물의 생산을 소홀히한 채 수매가격이 높은 작물이나 기타 다른 생산에 치중한다면 그것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투쟁과 전반적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비판했다.

7·1조치 이후 성과에 따른 분배가 적용되면서 일부 중산층 노동자 가족 및 협동농장 농민들의 수입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이들은 북한이 요구하는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노동하거나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직장과 협동농장, 그리고 자기 가족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돈벌이에 집착하는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북한당국의 입장은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소속 직장과 자신의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절히 배합·운영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¹⁹ 『경제연구』(2004년 3호)에서 재인용, 『연합뉴스』, 2004년 11월, 7월.

2. 분배부문에서의 변화

가. 농업부문(농민)의 상대소득 증가

북한은 7·1조치로 인한 물가 조정 및 생활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배급제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책임진다는 국가 시책을 고수하기 위하여 북한은 쌀에 대한 배급표제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²⁰ 즉 7·1조치를 통해 쌀의 국정가격을 농민시장 시세를 반영해 대폭 인상했지만 식량배급표 제도는 그대로 둠으로써 식량배급제를 명목상으로 유지해 왔다.

식량배급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는 쌀의 수매가격을 시장가격에 접근시켜 인상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농민들은 쌀을 농민시장에 내다 팔지 않고 인상된 수매가격으로 국가에 수매하여도 별다른 손실을 입지 않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7·1조치를 통해 북한은 농민들에게 쌀을 비롯한 일정량의 곡물을 국가에 판매해야 할 행정적 의무와 함께 물질적, 경제적 동기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수매가격의 현실화를 통해 북한은 국가에 의한 곡물 수매를 가능케 하고 식량공급체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이것이 쌀을 비롯한 주요알곡과 기초식품에 대한 ‘배급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은 분명하다.²¹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에 대해서는 국가가 계속 장악도 하고, 책임도 진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²⁰ 박순성, 『북한경제와 한반도 통일』(서울: 풀빛, 2003), p. 132.

²¹ 『조선신보』, 2003년 1월 22일.

북한의 배급제도, 특히 1946년부터 실시해 온 낮은 가격에 의한 식량공급제(배급제)는 협동농장원을 제외한 모든 주민(노동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7·1조치를 시행하면서 “누구든지 자기가 번 돈으로 쌀을 제 가격으로 사 먹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²² 바꾸어 말하면 식량배급제를 유지하면서도 과거와는 달리 국가는 오직 공급만 책임지고 구매수준과 구매량은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한 것이다. 국정가격(배급가격)이 시장가격 수준으로 현실화(인상)되었다는 것은 배급제가 실질적으로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7·1조치 이후 북한 당국에 의한 배급제도의 물리적인 축소 시도는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 같다.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공적 배급체계는 공급부족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주민들은 농민시장을 통해 부족한 식량을 조달해 왔기 때문이다. 오히려 7·1조치로 인한 국정가격(배급가격)의 시장가격화가 가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북한은 외형적으로는 배급제를 유지하기로 하였지만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실상 국정가격을 현실화함으로써 배급제도를 실질적으로 축소한 것이다.

북한이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에 대한 저가의 공급정책을 포기하면서 배급제도를 사실상 축소한 것은 지난 시기 이 제도로 인해 나타난 부정적 현상에 대한 반성의 표출이다.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재정부담 하에서는 하루만 일하면 한달치 식량을 사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생산 활동에서

²² 조선로동당출판사, “가격과 생활비를 전반적으로 개정한 국가적 조치를 잘 알고,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앞당기자(2002년 7월),” p. 43.

열성을 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많은 가정주부가 사회에 진출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는 국가가 식량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게 되자 직업까지 버리고 장사나 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채우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었다.

배급제도의 실질적인 축소로 인한 가계부담의 대폭적인 증대는 북한 문건에도 잘 나타나 있다. 북한은 “지난 시기, 노동자, 사무원의 실질 생활비에서 식량값이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3.5%밖에 안되었다”면서 “앞으로는 국가가 협동농장에서 수매한 식량값에 일정한 부가금을 청구해 지금의 식량공급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매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근로자의 실질 생계비에서 식량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정도가 된다”고 한다.²³ 배급제도의 실질적 축소로 북한에서는 국가사회적 시책에 의한 분배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개인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농민들의 소득은 일반 노동자들보다 비교적 높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1조치 이후 농민의 경우 무기능 농민이 1,320~1,570원, 단순 기능보유 농민이 1,830~2,080원, 고급기능 보유 농민이 2,340~2,480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등 숙련된 농민 대부분이 2,300원 이상을 받고 있어 소득 수준은 일반 사무원들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농민들이 그간 저가양곡 정책으로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으나 7·1조치 이후 대우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간 수확물을 정부에 판매해서 얻는 협동농장원들의 소득은 월 500원에서 4,000원까지 농장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²⁴

²³ 위의 글, p. 43.

²⁴ FAO/WFP,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나. 농장(농민)간 소득 격차의 발생

북한은 노동자와 사무원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때 노동량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소가 계획보다 더 수행했다고 하여 모두 똑같이 계산해 주었고, 협동농장에서도 일을 잘했건 못했건 가동일수만 보장하면 식량을 가족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지급했다고 지난 시기를 반성하면서 평균주의의 타파를 강조하고 있다. 7·1 조치가 추구하는 방향은 “국가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제대로 실시하여 사람들이 실제 자기가 일한 만큼 득을 볼 수 있도록 생활비를 개정했다”는 대목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²⁵ 다시 말하면 노동의욕 고취와 생산성 제고를 위해 소득의 분배구조를 개편한 것이다.

이러한 분배구조의 개편은 일차적으로 생활비의 차등 인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생산자 우대의 원칙에 따라 비생산부문 노동자의 생활비는 17배 정도 인상된 반면, 중노동생산부문 노동자의 경우에는 20~25배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직업별 기본생활비의 격차는 최고 3배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비록 북한이 전반적 가격 인상에 맞추어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생활비를 인상하도록 하였다”고 부연하고 있지만 생활비 차등 인상의 결과로써 소득분배구조의 변화는 예견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누진노급제와 같은 성과급을 도입함으로써 소득의 분배구조에 있어 더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이 제도에 따라 일부 탄광에서는 탄부들의 평균 임금인 6,000원의

²⁵ 조선로동당출판사, “가격과 생활비를 전반적으로 개정한 국가적 조치를 잘 알고,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앞당기자(2002년 7월),” p. 42.

수 배 이상을 받는 탄부도 생겨났다고 북한은 자랑하고 있다. 협동농장에서도 일한 만큼, 벌어들인 만큼 분배한다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이 정착돼 연말 결산분배에서 최하위단위인 분조도 생산 실적에 따라 분배를 받고 있으며 분조사이의 분배 몫에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일부 협동농장의 경우 2003년 결산분배에서 농민들의 월 평균 분배몫인 2,300원의 2~4배까지 분조원에게 현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협동농장의 일부 농장원들도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조선신보』는 남포시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의 경우 지난해(2003년) 결산분배에서 분조원 1명당 평균 6만원(북한 원)의 현금을 받았으며 최고 분배 금액은 12만 원이었다고 밝혔다.²⁶ 그리고 과거 총 수입의 50%를 토지사용료와 생산비용으로 국가에 납부했으나 지난해에는 중학생들의 노력지원은 받지 않고 대학생들만을 받아들이고 부족한 일손은 농장내 직업반의 공동노력으로 대체해 상당액의 인건비를 줄였다는 것이다. 황해남도 안악군에서는 가족단위로 30만 원 이상의 돈을 받는 농장원들이 있다고 한다.²⁷

생활비의 차등인상과 실적 위주의 성과급 도입을 통해 북한은 평균주의 타파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 같다. 평균주의를 배제하자는 것은 소득분배에 차등을 두어 근로자들의 노동의욕을 제고시키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7·1조치를 통해 명목 소득에서의 증가와 개인별 차이가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

²⁶ 『조선신보』, 2004년 1월 23일.

²⁷ 『조선신보』, 2003년 4월 22일.

상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명목소득의 증가가 실질소득의 증가로 이어질 때 노동의욕이 제고되고 생산성 향상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비록 7·1조치를 통해 평균주의는 타파할 수 있었지만 소득분배구조의 개편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실질소득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3. 가격·유통부문에서의 변화

가. 농산물 가격의 지속 상승

가격과 생활비의 인상을 전면적으로 단행한 7·1조치 이후 북한의 시장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특히 2003년 들어와서 시장 가격의 상승폭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나 2002년 2월 대비 2003년 2월의 농민시장 물가는 평균 2.5배 상승하였다. 쌀은 kg당 평균 47원에서 130~150원으로 2.8배 이상, 옥수수는 kg당 32원에서 75~85원으로 2.3배 이상, 돼지고기는 kg당 139원에서 360~380원으로 2.6배 이상 상승하였다.

<표 III-2> 북한의 농산물 시장가격 변화

(단위: 북한 원)

	단위	2002.2	2002.7	2003.2	2003.7	2004.4	2005.10	2005.12
쌀	kg	47	80	130~150	156	350	705	850
옥수수	kg	32	57.5	75~85	116	150	222	286
콩	kg	44	-	180~190	160	300	376	464
밀가루	kg	41	-	-	176	325	750	775
두부	모	13	-	-	56	73	136	188
돼지고기	kg	139	290	360~380	539	1,121	2,320	2,463
달걀	개	11	15	22~25	46	59	189	208
배추	kg	18	-	-	75	80	93	206
무우	kg	17	-	-	34	40	58	170
감자	kg	14	-	-	93	68	113	138
사과	개	31	-	-	94	107	170	250
고추장	봉지	123	-	-	187	165	378	410
간장	병	21	-	-	62	80	240	250
된장	봉지	50	-	-	98	155	206	208

출처: 통일부 내부자료; 남성욱, “2002년 북한의 임금과 물가인상에 따른 주민 생산·소비행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15권 2호(2003년 하반기), pp. 110, 112.

농민시장(종합시장)과 같은 사적 상업유통망에 대한 의존이 높은 북한 주민들은 국정가격이 아니라 시장가격의 변동에 매우 민감하다. 시장가격의 상승은 곧바로 실질소득과 구매력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종합시장에서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국이 가격에 대해 일정한 상한선인 한도가격을 설정하고 있다.

2003년 12월에 취해진 ‘종합시장 체계화조치’에 따르면 북한은 “쌀, 기름을 비롯한 중요지표 상품의 한도가격을 설정, 수요와 공

급에 따라 10일에 한번씩 검토하여 ‘적절한 가격’을 산출하기”로 하였다. 2004년 3월 통일거리시장에 고시된 쌀값의 한도가격은 240원이지만 실제로 250원에 거래되고 있어 중요지표 상품도 실제로 한도가격을 넘어 거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²⁸ 한도가격이 설정된 품목은 평양 통일거리시장의 경우 19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북한은 종합시장 내에 도매반을 운영하면서 가격경쟁체제를 도입해 왔다. 종합시장에서 한도가격을 넘어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북한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한 이 조치에 대해 행정적 통제보다는 경쟁에 의한 견제라는 주장도 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상품공급이 제약된 상황에서 한도가격이 지켜지는 것은 어려운 일로써 종합시장에서는 사실상 시장가격에 의해 상품이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가격의 상승세는 2004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초가격인 쌀 가격의 시장가격 변화를 살펴보면 7·1조치 이후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초인플레이션을 실감할 수 있다.²⁹ 쌀의 시장가격은 2004년 4월에는 350원 수준으로 올랐고, 2005년 12월 말에는 850원 정도로 급상승하였다. 비록 계절적인 요인이 작용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기간 쌀의 시장가격은

²⁸ 2004년 초 통일거리시장에서의 곡물가격은 2003년에 비해 30~60% 올라 쌀(백미)의 한도가격이 240원으로 60%, 옥수수 30% 상승하였고, 돼지고기는 500~750원에 거래되었다. 8월 현재 500원이라고 알려진 쌀 가격은 이것이 시장가격인지 한도가격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²⁹ 더구나 탈북자 단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7월의 청진지역 장마당에서 쌀은 900원/kg, 식용유 2,000원/kg, 돼지고기 2,700원/kg, 계란 100원/개, 설탕 900원/kg에 거래되고 있어 거의 살인적인 수준으로 물가가 상승하였다고 한다.

2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7·1조치 당시와 비교하면 쌀 가격은 3년 반 동안 거의 10배 정도나 상승한 셈이 된다.³⁰

북한은 7·1조치를 시행하면서 “적어도 수개월이상물의 초기 물자확보전망이 서지않고서는 안정된 가격에 의한 류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면서 소비물자를 확보하고 그것을 국영상업망에로 투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타산과 준비와는 달리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의 공급부족 현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그 결과 가격 현실화와 생활비 인상에 따른 통화량 증가는 고스란히 물가인상으로 귀결되었다. 뒤늦게 북한은 통화량 환수를 위한 조치로 2003년 3월 말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농산물 시장가격의 급상승에 따라 7·1조치 당시 시장 가격에 근접한 수준에서 현실화되었던 수매가격과 시장가격과의 격차는 다시 크게 벌어지게 되었다. 수매가격과 시장가격과의 괴리는 농민들이 국가수매를 기피하고 농산물을 시장에서 판매함으로써 추가적인 소득 증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결과적으로 국영유통망을 통해 공급되어야 할 농산물을 시장거래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국영유통망의 위축과 상업유통망의 확대를 불러오고 있다.

³⁰ 7·1조치 이후 북한에서의 초인플레이션은 달러에 대한 북한 ‘원’의 시장 환율(원/\$)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북한 ‘원’의 시장 환율은 220원(2002년 2월), 500원(2002년 12월), 670원(2003년 2월), 1,000원(2003년 12월), 2,000원(2004년 8월)으로 쌀의 시장가격 상승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다.

나. 상업유통망의 확대

7·1조치를 통해 북한은 농민시장의 비중을 줄이고 국영유통망을 통한 사회주의 분배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국영유통망의 역할은 수매가격 인상 등의 조치를 통해 일시적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7·1조치 이후 국가의 식량 배급 기능이 축소되어 도시 소비자는 필요한 식량의 50% 이상을 시장에서 구입하고 있다. 국가의 배급 능력이 저하되면서 국영유통망의 역할이 축소되고 농민시장이 더욱 활성화되어 왔다.

시장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북한 당국은 2003년 봄 기존의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개편하고 여기에서 식량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과 함께 공산품까지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가격결정에서의 분권화 및 초과생산물에 대한 자유 처분권 확대 등은 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북한은 7·1조치 이후 중앙의 가격결정권을 일정 부분 지방정부나 기업소에 이양하였다. 초기에는 초과생산물을 정부가 수매가격으로 구매하였으나 점차 분조에게 자유처분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을 통한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7·1조치를 통하여 농산물의 배급가격을 시장가격과 유사하게 상향 조정하고 생활비도 인상하였다. 쌀 가격을 물가의 지표로 삼고 (종합)시장에서의 급격한 농산물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한도가격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농산물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자 시장가격과 국정가격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종합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한도가격을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쌀의 경우 국영유통망을 통한 공식적인 판매가격이 kg당 46원이지만 시장가격은 공급 부

족으로 2002년 7·1조치 전후 80원 수준에서 2005년 12월에는 850원 수준으로 10배 이상 상승하였다. 시장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농민들이 시장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려는 욕구는 더욱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국영유통망을 통한 농산물 공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실적에 따른 임금(생활비)의 차등 지급이 일반화되자 국영유통망은 수매상점의 기능을 강화하여 배급 기능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농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상업적 유통 기능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이런 기능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영유통망은 상품(농산물)의 공급량과 품질면에서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지 못한 실정이다.

결국 7·1조치 이후 최근 북한의 농산물 유통체계에서의 변화는 이원화되어 있는 공식 유통망의 위축과 상업적 유통망인 종합시장의 확대를 가져왔다. 국영상점과 종합시장 사이에 가격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북한 당국이 의도하는 대로 국가유통망을 위주로 하는 사회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가유통망의 물적 공급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농민시장 및 종합시장의 기능을 일시에 약화시킬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IV

중국과 베트남의 농업개혁 사례

1. 중국의 농업개혁

가. 인민공사의 해체

1956년 농업 집단화가 완성된 이후 중국 전역에서는 합작사를 인민공사로 개조하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1958년 10월 인민공사 수는 2만 6,000개가 되었고, 인민공사에 참가한 농호가 전체 농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9% 이상이 되었다. 인민공사 체제 하에서는 소수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생산수단이 인민공사의 소유가 되었다. 인민공사 체제의 기본 특징은 “일대이공(一大二公)”과 “정사합일(政社合一)”로 요약된다.³¹

인민공사는 공사·생산대대·생산대로 구성되는데, 공사는 농업에 새로운 투입 요소를 제공하면서 생산대대와 생산대의 조정 역할을 맡았다. 생산대대는 공사의 일을 보조하면서 생산대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생산대는 기본적 의사결정 단위이자 회계단위로서 생산대의 노동력은 자율적으로 조직되고, 8~10가구의 작업조로 분할되었다.

경제조직으로서 인민공사는 농업·목축·부업·어업 등을 다각적으로 경영했다. 이런 인민공사의 생산방식은 국가의 통일계획과 해당 지역의 여러 원칙(制宜的 原則과 勤儉辦社 原則)에 근거한 농업과 공업, 자금 생산과 상품 생산의 동시 병행방식이다. 대호룡(大呼隆)으로 불리는 집체 노동방식에 따라 수십 명의 노동력이

³¹ “일대이공”은 인민공사의 규모가 크고 생산 자료의 공유화 정도가 높은 것을 지칭한다. 인민공사는 평균 5,000가구로 구성되었고, 이전의 고급 합작사에 비해 규모 면에서 30배 정도였다. “정사합일”은 인민공사가 생산 단위이자 정권 조직임을 뜻한다. 김종덕, “중국 농업 생산 체제의 개혁에 관한 연구,” 『사회와 역사』, 제54집(1998), p. 214.

통일 지휘 하에 동일 시간 동일 장소에서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 분배제도는 ‘반입금제, 반공급제’를 채택하였다.³²

인민공사는 출범 이후 곧바로 관리의 혼란과 오풍(五風: 공산풍, 과장풍, 강박 명령풍, 간부 특수화풍, 생산방해 지휘풍)의 만연, 사원 노동 열정의 보편적 저하, 양식 부족문제의 돌출, 당과 농민 관계에서의 갈등과 같은 문제에 봉착했다. 이런 문제들은 인민공사 및 생산대 간부의 경험 부족과 낮은 문화적 소양, 집체 노동에 편승하려는 이기심의 발로에 따른 노동 기피 현상, 그리고 당의 과도한 간섭과 지도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 때문에 나타나고 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인민공사의 착오를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1962년 9월 27일 열린 중국 공산당 제8기 중앙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는 「농촌인민공사공작조례」(수정초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에서 생산대대가 인민공사의 기본회계 단위로서 부채와 잉여에 대한 독립회계를 실행하고, 생산을 직접 조직하며, 수익 분배를 조직하는 것으로 정했다. 사원들의 가정 부업은 자본주의적인 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아서 취소했다. 인민공사의 분배제도에서 평균주의를 강화하고, 공사의 집중적 통일적 지도를 통해 생산을 실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제도를 향후 30년 동안 바꾸지 않기로 하였다. 1978년에 거행된 3중전회에서 제정한 「농촌인민공사공작조례」(시행초안)에서는 생산대에 기초한 인민공사 3급 소유제의 실행³³, 생산대의 소유권과 자주권의 존중, 노력분배원

³² 박정동, “사회주의 농업체제 개혁에 관한 사례연구,” 『비교경제연구』, Vol. 8, No. 1 (2000), p. 277.

³³ 3급소유제 하에서 토지, 역축(役畜), 농기구 등 기본적인 생산수단의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생산대에 소속되고, 생산대에 의해 관리·사용된다. 그러나 일부 생산수

칙에 따른 집행 등을 정했다.

인민공사제도의 개혁은 1979년 농업생산책임제의 도입과 함께 활발히 거론되기 시작하고 이후 개혁과정에서 급격히 해체된다. 1981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는 현(縣) 이상의 지방 간부에게 「인민공사 존폐 문제를 요구하는 의견에 대한 통지」를 하달했다. 1982년 4월에 개최된 5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13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헌법수정초안」을 가결하면서 인민공사의 해체를 결정했다. 12월 「신헌법」은 인민공사를 농촌생산합작사나 기타 합작경제조직과 동렬에 놓았고 나아가 농촌에서 향인민정부의 설립을 규정했다. 「신헌법」은 인민공사를 기존의 정사합일에서 정사분리로 전환하였다. 1983년 1월 중국 공산당 중앙이 공포한 「당전농촌경제적약간 문제(當前農村經濟的若干問題)」에서 인민공사의 정사합일 체제의 개혁이 농촌 경제체제 개혁의 주요 내용임을 밝혔다.

1983년 10월 12일 중국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은 「관우실행정사분개건립향정부적통지(關於實行政事分開建立鄉政府的通知): 정사를 분리해 향정부를 설립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제출,³⁴ 1985년 봄까지 전국에서 향정부와 경련사(經聯社) 혹은 합작사를 건립하여 인민공사를 대체하도록 하였다. 1984년 1월에 발표된 「관우1984년공작적통지(關於1984年工作的通知)」는 정사분리 이후 농촌의 각급 경제조직 규정을 마련하였다. 중앙 문건의 지도하에 인민공사는 각지에서 정사분리가 진행되었고, 1985년 6월

단은 생산대대 및 공사에 소속되고 이들에 의해 사용된다.

³⁴ 이 통지의 제1조에는 “정사분리 및 향정부의 설립공작은 향인민대표대회 대표자 선거공작과 결합해서 추진하고, 대략 1984년 말까지 이것을 완성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존 공사의 관할 범위를 기초로 하되 기존 공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적당히 분할해도 좋다”고 향의 규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인민일보』는 정사분리공작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보도하였다. 그 결과 1982년 말 5만 4,353개였던 인민공사는 1985년 말에 8만 3,182개의 향(鄉)인민정부와 7,956개의 진(鎭)인민정부로 되었고, 아울러 1982년 말 71만 9,438개였던 생산대대는 94만 여개의 촌민위원회로 바뀌었다.³⁵

<표 IV-1> 인민공사의 해체 추이

(단위: 개)

	정사미분리(政社未分離)		정사분리(政社分離)	
	인민공사	생산대대	향진정부	촌민위원회
1982	54,352	719,000	0	0
1983	40,079	550,484	16,252	199,657
1984	249	7,046	91,171	926,439
1985	0	0	91,138	940,617

출처: 중국 국가통계국 편, 『중국통계연감』(북경: 중국통계출판사, 1983~1986).

나. 토지제도의 개혁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서는 농촌 토지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생산청부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농업개혁은 사회주의 소유제 근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①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하고, ② 농업 경영의 주체로서 농가의 지위를 확립함과 동시에 공유토지와 농가경영방식의 합리적 결합을 실현하는 것이다. 농가청부제(농업 생산책임제)의 도입으로 시작된 중국의 농업개혁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인민공사(人民公社)의 해체와 가족 경영의 부활이다.

³⁵ 박정동, “사회주의 농업체제 개혁에 관한 사례연구,” p. 279.

농촌토지제도의 개혁은 대체로 3단계로 나뉘어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다. 1단계(1979~1983년)에서는 인민공사 시기의 집체경영에서 벗어나 농가경영의 기본형태인 농업생산책임제를 확립하였다. 2단계(1984~1993년)에서는 농가청부경영의 기본구조를 확립하고 토지청부경영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였다. 1993년 이후 3단계에서는 토지청부기간을 다시 30년으로 연장하고, 농가가 토지 사용에 대한 실질적, 법률적으로 완전한 권리를 갖도록 하였다.

(1) 농업생산책임제 도입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를 계기로 인민공사 제도의 틀 속에서 생산대(生産隊)의 자주권을 확대하는 방침이 결정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생산책임제 중 포공도조(包工到組: 생산대에 대해서 농작업을 청부하는 것)와 생산량 기준의 보수 지급만을 인정하였다. 이 시기 생산책임제는 청부대상이 농작업인 경우 미리 정해진 노동점수를 부여함으로써 보수를 계산하였고, 청부대상이 생산량인 경우 생산량을 기준으로 보수를 계산하였다. 특히 농작업을 농민에게 청부하는 형태는 축산물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개별농가를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었다. 1979년 당 중앙위원회 회의 「농업발전을 위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결정」(초안)에서는 각종 형태의 생산책임제를 도입하고, 변경지역에서 호별청부제(戶別請負制)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한편 식량생산 분야에서도 포산도로(包產到勞: 생산대가 경작하면서 파종과 경작을 개별농가에 위임하는 방식)가 확대되었다. 이 방식에서는 과제수행 여부에 따라 장려금과 벌금이 부과되고 생산대가 주요 생산수단을 소유하였다. 생산과제는 농가가 이용

하는 토지에 따라 부여되었으며, 부여된 생산과제에 따라 농가의 노동점수를 계산하였다. 당시 중앙에서는 개별농가에 대한 청부를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았지만, 지방 차원에서는 포산도호(包產到戶: 조별 생산청부제) 및 포간도호(包干到戶: 호별 경영청부제)로까지 발전하고 있었다. 1979년 개최된 4중전회에서는 위의 ‘결정(초안)’을 공식 채택하면서 변경지역에 한해 호별청부제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매우 제한적인 조치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 초까지 중국에서는 정액포공(定額包工: 정액보수를 지급하고 농작업을 청부하는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중앙이 농가청부생산책임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은 1980년대 들어서이다. 1980년 9월 당중앙위원회는 “농업생산책임제를 더 한층 강화·완성하는 것에 관한 몇가지 문제”라는 문건 제정을 통해 만일 농민들이 ‘포산도호’를 요구할 경우 ‘포산도호’와 ‘포간도호’가 허용된다고 발표하였다. 이 시기 전국의 당·군에서 발표한 ‘제75호 문건’에서는 전국 농촌의 1/3에 달하는 후진·빈곤지역에 대해 안휘성(安徽省)의 성공적 경험을 적용하는 한도 내에서 호별청부제를 인정하였고 이것은 1980~1981년 사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어서 1981년 10월에 개최된 전국농촌공작회의(全國農村工作會議)를 거쳐 1982년 1월에 발간된 『전국농촌공작회의기요(全國農村工作會議紀要)』에서는 다양한 사회주의 집체경제의 생산책임제를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포산도호’와 ‘포간도호’는 중국 농업부문의 사회주의 집단경제의 책임제 형식으로 정식으로 인정되었다.

(2) 포간도호의 급격한 확산

‘포산도호’는 개별농가가 집단소유(생산대)의 토지를 분배받아 독립적으로 생산활동에 임하지만 생산대가 모든 생산물을 취합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한 농가에게 추가로 분배하는 방식이다. 반면 ‘포간도호’는 생산대 소유의 토지를 분배받아 독립적인 경영을 행하는 점에서는 ‘포산도호’와 같으나, 개별농가는 청부계약에 따라 계약물량만 생산대에 납품하고 나머지는 소유하는 방식이다.³⁶

중국에서의 농업생산책임제는 빠르게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빠른 속도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1978년 변방의 1개 현에서 부활해 집단적 농업생산 및 분배방식을 겨우 벗어난 ‘포공도조’ 형태에서 시작한지 불과 5년만에 시장경제하의 농업경영과 다를 바 없는 ‘포간도호’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발전한 것이다. ‘포간도호’가 중국 농업부문 생산형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3년에 이미 98% 수준에 도달하여 실제로 농가책임생산제인 ‘포간도호’만 남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1982년 말 수정된 새 헌법에서는 인민공사에 통합되어 있던 경제조직과 국가기관의 기능을 분리하여 향·진 인민정부와 촌민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1983년 이후 향·진 인민정부와 촌민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84년에 인민공사의 정사분리가 완료되었다.

³⁶ ‘포간도호’에서 토지의 사용권은 식구수로 정해지는 가계별 생계수요를 반영하여 할당되거나, 국가와 개별농가간 청부계약에 의해 할당되었다. 청부계약은 일정토지에 대해 개별 농가들이 식량수매량을 입찰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생산대는 계속 개별농가에 대하여 농업세와 의무수매 책임량을 부과하는 권한을 갖지만, 개별농가는 국가에 대하여 농업세와 의무수매 책임량을 납입하고 생산대에 대하여 집단보유분을 납부한 후 남은 부분에 대하여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표 IV-2> 중국 농업부문 생산책임제 보급상황

(단위: %)

	1980.1	1981.6	1982.6	1983.12	1984.12
집단적 생산	15.2	4.9	0.8	0.5	0.1
농업생산책임제	84.8	95.1	99.2	99.5	99.9
포산도호	1.0	16.9	4.9	n.a.	n.a.
포간도호	0.0	11.2	67.0	97.8	98.9
기타	83.8	67.0	27.3	n.a.	n.a.

출처: 김운근·김영훈·이일영, 『사회주의농업의 체제전환과 북한농업 전망』(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12).

중국에서 진행된 일련의 농업개혁조치는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자극하였고 이에 따라 농업생산은 크게 증대되었다. 경지는 대부분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개별농가에 분배되었으나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하여 사용권만을 분배하였다. 1975~1980년에 농업생산액은 16.9%(연평균 3.2%) 증가하였으나, 농업개혁이 활발히 전개된 1980~1985년에는 48.2%(연평균 8.2%)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³⁷ 이러한 농업개혁에 힘입어 중국의 농업생산량은 1978년 3억 477만 톤에서 1984년 4억 732만 톤으로 증가해 이 기간에 약 30% 이상의 식량 증산이 이루어졌다.

(3) 토지청부기간 연장

‘포간도호’가 농업생산책임제의 주요한 형태로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1984년 말까지 농촌지역에서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완전히 분리되었다. 생산의 기본단위로 정착한 개별농가는 기본적인 책임 할당량 또는 세금을 납부하면 농업생산에서의 자주권

³⁷ 이일영, 「1980년대 중국의 농업개혁」(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4).

및 경영의 융통성을 가지게 되고, 초과 농산물에 대한 처분권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촌경제의 기반이었던 집체경제가 신속히 해체되면서 농민들은 토지청부기간의 연장을 요구하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1984년 「1호문건」을 하달하여 농지의 경우 1~3년에서 15년 이상으로 임차기간을 연장해 주었다. 1990년 12월 중국 정부는 몇몇 문건을 통해 ① 토지청부제 기간은 15년 내로 할 수 있고, ② 생산주기가 길고 개발가치가 있는 항목(과수, 수목, 황무지) 등의 청부기간은 더 길고, ③ 토지는 점진적으로 농사에 익숙한 사람에게 집중되도록 장려하고, ④ 청부기간을 연장하기 이전 토지 조정의 요구가 있을 때는 “대 안정, 소 조정”의 원칙에 따라 집체가 통일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들을 채택하였다.³⁸ 이것은 토지청부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농민의 안정감이 결여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 농가의 토지청부관계를 안정시켜 농민 이익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1993년에 이르러 제도가 규정한 15년의 청부기간이 근접함에 따라 앞서 규정한 청부기한과 연계하여 토지임차기간(청부기간)을 다시 30년 연장하는 정책을 정하였다. 중국 정부는 농가생산 청부경영책임제는 장기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기초 아래 농가의 토지청부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청부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를 완비하게 된 것이다. 전문경영농가의 경우 최장 50년까지 임차가 가능해 사실상 토지는 농가의 개인 소유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³⁸ 권태진 외, 『북한의 농업부문 개혁·개방 정책과 남북협력』(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12), p. 49.

다. 가격·유통체제 개혁

(1) 1단계: 1978~1984년

1978년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토대를 둔 농업부문 개혁의 다른 한 측면은 농촌 유통체제의 개혁이다. 개혁·개방 이후 농산물 유통체제의 개혁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 개혁은 1978~1984년, 2단계는 1985년 이후 진행된 개혁이다.

1단계 유통체제 개혁은 농가생산책임제에 부합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무원이 농산물의 수매가격을 대폭 인상하고 수매제도의 개편을 시도한 것이다. 둘째, 농산품 경영체제를 다양한 경제형식(국영상업과 합작상업을 위주로 하되, 집체상업과 개체상업의 다양한 경제주체 포함)으로 하며, 농산품 유통체제를 다양화하고, 국영 및 공소사(供銷社)의 일괄 구입과 일괄 판매 체제를 타파, 농산물 무역시장을 개방한 것이다.

중국은 1953년 11월 이후 ‘계획수매·계획배급’제도를 확립해 국가가 유통시장을 장악해 왔다. 이 제도 하에서 중국은 국가가 정한 품목, 수량, 가격에 기초하여 농민으로부터 생산물을 조달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낮은 가격에 일정량의 식량을 보증하는 배급제를 운영하였다. 가격은 계획수매가격에 수송비·조작비·가공비·조세·이윤을 더한 수준에서 국가가 조절하고, 국가 상업부문은 거래과정에서 약간의 이윤을 획득했다. 식량의 경우 배급가격 수준은 국가수매가격보다 5~15%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농업개혁으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중국은 농산물 관련 가격보조에 따르는 재정 압박이 존재하지 않아 농업 증산을 위한 가격정책 실시에 부담이 거의 없었다. 이런 상황은 개혁 초기에 농업

부문에서 영농 의욕 제고와 증산 동기를 제공하는 수매가격 인상을 가능하게 하였다. 중국은 1978년 말에 주요 작물에 대한 국가 수매가격을 조정·발표했고, 이듬해인 1979년산부터 이를 시행했다.

수매가격 인상에 따른 주요 작물의 계획수매가격의 평균 인상률은 17.1%였고, 초과수매가격의 평균인상률은 40.7%가 되었다.³⁹ 식량(곡물)의 경우 계획수매가격(할당가격)은 평균 20.86% 인상하였고, 계획수매량 이상의 초과수매에 대한 보너스(우대)가격을 이전 계획수매가격의 30% 수준에서 50%로 인상하였다. 기타 농작물(면화, 땅콩, 유채, 담배, 사탕수수, 사탕무 등)의 계획수매 및 초과수매 가격도 인상되었다. 이 과정에서 계획수매에 의한 수매량은 감소하고 초과수매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수매가격이 더욱 상승하게 되었다. 1978년 가격을 기준(지수 100)으로 할 때 수매가격 지수는 1981년 141.5로 최고 수준이었다가 1980년 후반에 와서 130 수준으로 다소 낮아졌다. 개혁이 시작된 1979년에 가장 높은 수매가격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다.

<표 IV-3> 국가 수매가격 추세

연도	1965	1970	1975	1978	1979	1981	1984	1985	1987
지수	84.1	97.2	98.4	100.0	140.7	145.1	142.5	129.4	130.2

출처: Justin Yifu Lin, "Rural Reform and Development," Ross Garmaut and Liu Guoguang, ed., *Economic Reform and Internationalization* (Crows Nest: Allen and Unwin), p. 87; 김종덕, "중국 농업 생산 체제의 개혁에 관한 연구," 『사회와 역사』, 제54집(1998), p. 228에서 재인용.

³⁹ 개혁 이전 중국의 국가 상거래에는 두 가지 가격이 존재했다. 곡물수매 책임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판매하는 작물에 적용하는 할당(계획수매)가격과 책임량을 넘어서 판매하는 작물에 적용하는 초과할당(초과수매)가격이다.

한편 생산자와 지방의 국가 상업기구가 합의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협의수매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었다. 계획수매 의무가 부여된 주요 농산물의 경우 의무량 이외의 수량에 대해서, 계획수매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농산물의 경우 전량에 대하여 협의수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1978년 말 이후에는 계획수매 의무를 달성한 생산자가 초과 생산한 식량을 자유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당시 시장가격은 계획수매가격보다 통상 30~50% 높았다.

이와 같이 유통부문에서 점차 국가의 독점이 완화되고 시장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가의 생산유인은 크게 자극을 받아 1979년 이후 식량 생산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소비의 증가는 소폭에 머물러 1983~1984년에는 식량 재고 과잉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 결과 농가의 '식량 판매난'과 국가의 '식량 저장난'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동시에 국가 수매가격의 인상은 1979년에 농산물 소매가격의 인상을 수반하게 되어 국가 재정부담을 급격히 증대시켰다.⁴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1983~1984년에 농산물 과잉재고에 대처하고 가격보조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왔다.

(2) 2단계: 1985년 이후

중국은 1985년 1월 1일 전국적으로 식량, 면화, 유지작물에 대한 계획수매제도를 폐지하고 계약구매(合同定購)를 실시하기로

⁴⁰ 소매가격 상승에 따른 생활비를 보상하기 위해 국가는 도시 거주자에게 매달 5~8위안을 제공했다. 이러한 가격보조로 인해 국가 재정부담은 1982년 94억 위안(국가예산의 8.4%)에서 1984년 370억 위안(24.6%)으로 늘어났다.

하였다. 계약수매제도는 국가 상업부문이 파종 이전에 각 품목의 수매량 및 품질에 관하여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확 후 그 계약에 따라 수매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수매가격체제는 기존의 계획수매제도의 이중가격체제(계획수매가격과 초과수매가격)에서 단일한 계약수매가격체제로 개편되었다.

한편 낮은 가격으로 도시지역에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배급체제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는 식량 수매를 담당하는 국유기업에게 가공·수송·보관비용 및 수매 유인을 위해 농민에 지불하는 프리미엄을 보조하였고, 배급을 담당하는 도시부의 상업기업에도 일정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가 식량 유통의 일부를 행정 수단에 의해 직접 관리하여 도시주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식량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하는 쌍궤제(雙軌制)가 성립하였다.

중국의 식량유통정책이 소비자 보호로부터 생산자 보호로 전환되고 있는 신호로 1990년 식량 보호가격 수매를 실시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이 해에는 식량특별비축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은 비상사태에 대비함은 물론 비축식량의 매입·방출을 통해 시장가격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개혁 이후 가격보조금을 계속 증대시켜 왔다.

한편 보호수매가격 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나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급체제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1991년에는 1965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배급가격 인상을 단행하였고, 1992년에도 배급가격을 인상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배급가격 인상폭은 140%에 달해 배급가격이 계약수매가격보다 높아지게 되었다. 이어 1992~1993년에는 식량배급제도 자체가 중국 각지에서 순차적으로 폐지되었다.

2. 베트남의 농업개혁

가. 소유형태의 변화: 농장경영방식의 변화

베트남은 1975년 통일 이후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를 중심으로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추진해 왔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운용해 온 베트남에서 의사결정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었으며, 주요 생산 활동은 핵심적인 경제주체인 국영기업과 집단농장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통일베트남에 사회주의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계획경제의 부작용과 비효율성이 가중됨에 따라 경제사정은 악화되고 생필품 부족 현상은 일반화되었다.

한편 베트남 지도부는 통일 직후 대표적인 쌀 생산지인 남부지역에 대한 농업 집단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다. 비록 1976년 말 베트남 공산당 제4회 전국대회에서 남부지역 농업부문의 사회주의적 개조방침을 확인하고 있지만,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부지역의 농업 집단화를 유보하였다. 남부베트남의 농업 집단화가 지체된 것은 북부베트남 집단농업의 심각한 생산 정체와 이에 따른 집단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와 북부의 경제적 통합을 위해 1978년 남부지역에 계획경제체제가 도입되었다.

남부지역의 농업 집단화로 메콩델타지역에서는 쌀을 비롯한 농산물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런 농산물 생산 부진에 직면하자 베트남 정부는 개인의 생산성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농장경영방식의 변화 조치로써 1979년 여러 지역에 시범적으로 최종 농산물 계약제(청부제)를 도입하였다. 이후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981년 1월 13일 「명령 100-CT-TW」를 발표해 시범 실시해 오

던 농산물 생산책임제를 정식으로 승인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였다.⁴¹ 최종농산물 계약제의 도입으로 협동농장 소속 농민은 개별가구단위의 영농이 허용되었다.

1970년대 후반 베트남의 많은 지역에서 협동농장과 개인 사이의 불법적인 계약제도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고 계속된 농업생산의 정체를 만회하기 위해 도입된 최종농산물 계약제는 집단경작의 틀은 유지하면서 개별농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개별농가가 기본 생산단위가 되어 농작물의 이양, 관리, 수확 등 직접적인 생산활동을 담당하고, 반면 종전 생산단위인 합작사(합영농장)는 비료 및 농약 공급, 관개정비 업무 등 생산지원활동만 맡게 되었다. 계약량을 초과하는 생산물은 농가에 유보하도록 하였고,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보충하도록 하였다.

최종생산물 계약제는 농민에게 토지사용권과 잉여생산물에 대한 자유처분권을 부여하고 농업생산을 가계단위로 분권화시키는 새로운 정책으로 농업생산성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그렇지만 도이모이 이전 농업개혁에서는 개별농가에 대해 토지의 장기사용을 허용하지 않아 토지개량 등 농민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유인할 수 없었다. 더구나 농산물에 대한 과중한 세금부담, 농산물 가격의 상대적인 정체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 농산물 수매가의 연불지급 등으로 인해 영농 인센티브가 감소하면서 베트남의 농업생산은 다시 정체에 빠지게 되었다.

한편 베트남의 본격적인 농업개혁은 1988년 공산당이 농민을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농업경제관리의 쇄신에 관한 정치국

⁴¹ 권태진 외, 『북한의 농업부문 개혁·개방 정책과 남북협력』, p. 84.

제10호 결의』를 발표(1988.4.5)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결의를 바탕으로 농업부문의 경영혁신과 종합적인 개혁이 추진되면서 농업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었다.

『제10호 결의』는 농업개혁을 위한 4개의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화된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다.⁴² 주요 목표는 ① 모든 경제 분야, 지역을 상업화 농업생산으로 전환하는 자유화 조치, ② 생산자인 농민의 이해관계를 올바르게 표현, ③ 민주주의의 확대와 법적인 문서의 이행을 촉진하고 새로운 형태의 농촌경제 개발 추진, ④ 새로운 경제구조와 경영이 가능토록 하는 조직과 인사의 개혁 등이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① 농가의 가족 수와 작업능력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고, ② 농민은 계약에 의해 취득한 토지에 대한 토지세를 납부하는 대신 여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시장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고, ③ 협동농장은 주된 경제 단위인 농가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도이모이정책 아래 농업부문에서의 주요 정책으로 ‘입찰방식 생산계약제’가 도입되었다. 『제10호 결의』에 의거하여 농지의 일부는 가족 수에 비례하여 분배하되 나머지는 입찰에 의해 배분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농 경험과 자금력 있는 농민이 토지를 대량 소유함으로써 농기계 사용 및 농업생산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토지사용 계약기간이 종전 5년에서 20년으로 장기화됨으로써 토지개량 투자가 가능해졌고, 농민은 수확량의 40~50%를 분배받게 되어 농민소득이 종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다.⁴³

⁴² 위의 책, pp. 92~93.

⁴³ 권성태·박완근, 『베트남의 경제개혁 추이와 시사점』(서울: 한국은행, 1999), pp. 24~25.

나. 토지사용권의 각종 권리 인정

베트남은 농업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업 및 농촌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해 왔다. 예를 들면, 정부는 농민들이 장기간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농장이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던 소나 농기구 등 주요 생산수단을 농민에게 불하하였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토지 문제와 관련된 각종 조치와 법의 제정이라 할 수 있다.

1986년 도이모이 추진 이후 농촌지역에서도 다부문 경제체제 구축의 첫 단계로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하여 개별농가에게 일정 토지를 배분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1987년 12월 「신토지법」을 공포하여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명확히 하였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서 여전히 토지는 전인민의 소유이고 토지 관리는 국가 경영 하에 있으나, 개별농민들의 토지사용권을 장기적·안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의 제정으로 소작농의 토지에 대한 권리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토지법」이 시행되면서 농민들은 농업생산과 농지개량 및 지력보호 등을 위한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후 농업생산도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1988년에는 「제10호 결의」에 의거 농지사용권을 최소 15년간 보장하도록 하였다.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3년 6월 베트남 정부는 「토지이용법」을 새로 제정하고 1998년에 이를 수정하였다. 이에 앞서 1989년 당 중앙위 총회에서 농지의 양도·사용권이 승인되었지만 법적인 보장은 없었다.

1993년 「토지이용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민들은 토지사용기간 중에는 토지와 관련한 5가지 권리(토지이용권의 양도, 상속, 임대, 토지의 교환 및 담보 제공)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⁴⁴ 「토지법」 세칙 중 중요한 것은 「명령 64-CP」(1993년 제정)와 「명령 02-CP」(1994년 제정)이다. 「명령 64-CP」는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장기 사용할 수 있도록 농가와 개인에 대한 농지의 분배 규정이고, 「명령 02-CP」는 산지의 분배를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토지의 국가소유 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나, 농업개혁을 통해 토지의 장기 사용과 토지사용권의 매매·양도·상속·임대·저당 등 각종 권리를 허용함으로써 토지의 실질적인 사유화를 인정하였다.

다. 가격 자유화 및 시장유통 확대

남부지역 집단화 추진 이후 농업생산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농업부문 증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고 조치로서 농업생산책임제를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가격·유통측면에서의 유인을 제공하였다. 농산물에 대한 수매가격 인상과 시장 유통 확대 등이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농업생산물의 가격자유화가 진행됨에 따라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낮은 농산물 가격유지를 위한 농산물 관리가격체제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1987년부터 1989년까지 기존의 최종농산물 계약제가 농가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그 동안 정부가 책정해 왔던 관리가격체제는 협의가격체제로 전환되어 사실상 농산물 가격결정에 시장가격이 적용되었다.

⁴⁴ 이일영, 『북한 농업개혁의 현황과 전망』(서울: 통일교육원, 2004), p. 130.

1981~1982년 베트남 정부는 가격보조를 폐지하기 위한 세 가지 가격조정을 단행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21개 품목에 대해서는 통제가격을 유지하고 기타 상품은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한 것이다. 가격조정의 결과 이중가격제도가 탄생하였고 농가의 판매가격과 소비자수입가격과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국영부문의 근로자는 혜택을 보았으나 농산물 생산과 농민의 소득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1980년 농산물 수매제도를 개선하였다. 과거 4가지 조달방법(농업세, 계획수매, 계획외 수매, 계약수매) 중 계획수매와 계획외 수매를 없애고 계약수매에 있어서는 생산자와 국가가 가격을 협의토록 하였다. 이러한 ‘협약가격’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농산물 수매가격은 자연스럽게 인상되었다. 1983년에는 수매가격을 일시에 500% 인상함으로써 자유시장 가격과의 격차를 줄이고, 쌀 잉여생산분에 대해서는 협약가격으로 국가에 판매할 경우 비료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우대조치를 실시하였다.⁴⁵

수매제도 개선을 통해 농산물 수매가격은 자유시장가격에 근접해 왔다. 그러나 농산물 수매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농산물을 국가에 수매하기보다는 여전히 더 많은 소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시장 판매를 선호하였다. 더구나 수매가격의 인상은 인플레이션과 국가 재정부담 증대라는 문제를 유발하였다. 실제로 개혁의 반작용으로 당내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1983년부터 1986년 사이에 집단농장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1985년 후반 국가 보조의 폐지와 이중가격체제

⁴⁵ 위의 책, p. 132.

에서 탈피해 시장에서 결정되는 단일가격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대대적인 가격(임금, 화폐 포함) 조정을 감행하였다. 이 조정의 일환으로 9월에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벼 수매가격과 지역적으로 조정 가능한 벼 수매가격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가격 개입으로 농산물과 공산물 가격의 격차는 축소되었다. 그렇지만 임금과 화폐개혁에 따른 충격으로 가격 조정의 이듬해인 1986년부터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베트남 화폐의 평가 절하, 실질임금의 하락 등 경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무정부적인 인플레이션 등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도 정부는 가격 개입(조정) 기조를 계속 유지했다. 『제10호 결의』를 통해 획기적으로 농업부문 생산체계의 개편에 나서는 한편, 유통 측면에서는 농산물의 유통 자유화와 쌀의 해외 수출을 허용하였다.⁴⁶ 이와 같이 생산, 유통, 무역 등 다방면에 걸친 인센티브는 농산물 증산에 기여하고 농업부문 실적을 향상시켰다. 베트남의 경우 농업부문의 개혁이 전체 경제의 시장화 개혁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농업부문 실적이 좋아지면서 1989년에 들어와서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국고 보조금 제도가 사실상 소멸되었다.

⁴⁶ 1998년 1월 23일 베트남 정부는 쌀 수출과 비료 수입에 관한 규정인 『명령 12-CP』를 발표하였다. 이 문서는 특히 농업부문의 수출입업자에게 중요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한다. 권태진 외, 『북한의 농업부문 개혁·개방 정책과 남북협력』, pp. 99~100.

라. 집단부문의 축소

계획경제체제 하에서는 국영부문과 집단부문이 베트남 경제를 좌우했다. 자급자족 원칙으로 운영되는 베트남의 농업부문에도 국영농장과 합작사(집단부문)가 있으나 대표적인 생산조직 형태는 합작사이다. 합작사는 몇 개의 생산대로 구성되고 합작사 관리위원회가 각 생산대에 생산량, 생산비, 노동 투입량 등 3개 지표를 부여하고 일정 기간(보통 1년) 생산을 맡긴다. 국영농장은 주로 인프라가 부족한 국경지대 또는 산악지대에 설립되어 있으며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비료 등을 자체적으로 조달한다.

통일 이전 북부베트남에서는 1958년 토지개혁 완료 후 농업 집단화를 추진하여 1960년대 말까지 총 농가의 85%가 합작사에 가입하였다. 남부베트남에서는 통일 후인 1978년 1월부터 집단화를 시작해 1979년 말까지 234개의 합작사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강제적 집단화 조치에 따른 남부베트남지역 농민의 반발과 합작사 관리위원회의 관리능력 부족으로 1980년 전반 약 50%의 합작사가 해체되었다.

합작사(집단부문)에서는 협동농장이 주요한 경영주체이다. 1987년 말까지 베트남에는 17,022개의 협동농장과 36,352개의 생산집단이 농가의 93%, 농지의 80% 이상을 구성하고 있었다. 생산수단의 급작스런 집단화를 기반으로 설립된 협동농장의 운영 방식은 명령에 따른 노동의 사회화에 기초하고 있었다. 따라서 협동농장의 회원 가구는 개별적인 경제활동이 허용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협동농장의 영농활동은 비효율적인 방식에 노출되어 있었다.

남부베트남에서의 합작사 해체는 농업개혁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88년 개혁 조치 이후 합작사의 역할은 크게 달라져 농업물자 판매, 관개용수 관리 등 서비스사업에 한정되었다. 동시에 집단경제는 협동농장과 생산집단의 수를 현저히 감축함으로써 『제10호 결의』에 따라 개혁을 추진하였고, 대부분의 생산집단은 스스로 해체하였다. 그 결과 합작사의 수는 1990년대 전반 이미 1985년의 절반 수준 이하로 급격히 감소해 1985년 5만 5,714개에서 1993년에는 2만 2,900개로 줄어들었다. 현재 남아있는 협동농장은 1만 1,000개 정도로 가정경제의 발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⁴⁷

<표 IV-4> 농업의 생산주체

	1985	1990	1991	1992	1993
농가호수(천호)	8,315	9,357	9,652	10,017	10,281
농업인구(천명)	41,244	45,421	46,734	48,183	49,574
국영농장(개)	1,376	793	686	623	651
합작사(개)	55,714	30,433	29,820	23,686	22,900

출처: Tran Van Tho, 『베트남經濟の新展開: 工業化時代の始動』(東京: 日本經濟新聞社, 1996), 조명철·홍익표, 『중국·베트남의 초기 개혁·개방정책과 북한의 개혁방향』(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12), p. 78에서 재인용.

⁴⁷ 1996년에 발효된 『협동농장법』은 과거의 협동농장을 새로운 형태의 조합으로 탄생시키기 위한 법적인 틀을 형성하고 있다. 권태진 외, 『북한의 농업부문 개혁·개방 정책과 남북협력』, p. 103.

V

북한 농업개혁의 방향과 과제

1. 북한 농업개혁의 방향

가. 농업개혁 여건

사회주의체제에서 분권화(decentralization), 탈집단화(decollativization), 시장화(marketization) 및 사유화(privatization)의 수준은 개혁의 기본적인 평가지표라 할 수 있다. 농업부문의 개혁은 일반적으로 집단부문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 농가책임생산제로의 전환 및 농민에 대한 주요 생산수단의 사용권 허용, 생산요소와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수급에 따른 가격 결정, 개인에 대한 생산물 자유처분권 및 주요 생산수단의 소유권 인정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⁴⁸

북한은 아직 본격적인 개혁을 추진하지는 않았지만 7·1조치를 전후하여 농업부문에서도 어느 정도 개혁적인 조치를 시행해왔다.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자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고, 실적에 따른 분배원칙을 강화하였다. 가격·임금의 인상조치를 단행하면서 농업생산을 자극하고자 곡물수매가격을 대폭 인상하여 현실화하였다. 그리고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개편하고, 시장을 통한 농산물의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민에게 소득증대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⁴⁸ 농업부문에서 ① 분권화는 현재의 소유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동농장, 국영농장, 농업기업소의 책임경영제와 의사결정 권한의 확대, ② 탈집단화는 협동농장 내 분조 규모를 점차 축소하여 가족 중심의 영농이 가능하도록 농가생산책임제를 한 단계 발전시켜 책임경영제로 전환하고 주요 생산수단의 사용권을 확대(임대, 매매, 저당), ③ 시장화는 생산요소의 일괄 분배와 농산물의 국가수매를 지양하고 생산요소와 농산물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요소 및 상품시장의 유통을 활성화하며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 ④ 사유화는 개인에 의한 생산물의 자유처분권을 확대하고 주요 생산수단에 대해 개인의 사용권을 소유권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런 현상만 두고 본다면 북한에서는 농업부문의 분권화와 일부 시장화가 다소나마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북한 농업부문에서의 제도 및 조직의 개혁 가능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정치체제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제도 및 조직 개혁은 시도된 바가 없다. 오히려 북한은 농업지도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적인 관리·운영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집권화된 경영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 시도한 개혁·개선 조치들의 본질은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계획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농업부문에서의 각종 개혁적 조치들은 되돌릴 수 없는 변화된 환경을 유발해 왔다. 농민들은 시장 거래에 노출되어 있으며 생산유인을 제공하는 더 많은 분권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수매와 배급에 의해 식량을 공급하는 중앙관리체계를 축소함에 따라 주민들은 시장 의존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7·1조치 이후 지속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으로 농민들의 시장 판매에 대한 욕구는 더욱 높아져 왔다. 그 결과 농업부문의 집단체제에 부분적인 이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7·1조치 이후 북한에서는 경제체제의 의미있는 내적 변화가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시장을 통제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회주의 유통의 일환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가 설정한 범위 내에서 가격 결정이 탄력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점도 변화된 모습의 하나이다. 공장·기업소의 경영자율권이 확대되고 수익 중심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내적 변화는 향후 북한 농업부문에서의 본격적인 개혁을 촉발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급진 개혁보다는 단계적인 개혁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는 농업개혁 과정에서 토지소유와 경영에 관한 개혁을 먼저 추진하고 시장 및 유통 개혁은 단계적으로 단행함으로써 경제에 미치는 충격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토지 소유관계와 농업관리제도를 개편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킨 다음 농산물 가격과 농민소득 문제는 추후 해결하고자 하였다. 농업개혁의 목표는 농업생산성 향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농업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주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비록 농업부문이 사회주의 색채가 가장 짙은 부문이지만 북한은 당면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하여 본격적인 농업개혁을 시작할 가능성은 있다. 북한의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농업부문은 제도의 개편만으로도 상당한 생산성 증대를 가져와 식량난 완화 등 국민생활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다. 체제전환을 경험한 국가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경제개혁 초기의 인플레이션을 조기에 극복하는 것이다.

나. 농업개혁 기본방향

중국의 경우 농업개혁은 상대적으로 개혁이 용이한 부분에서 출발하여 차츰 어렵고 복잡한 부분으로 확대해 갔다. 먼저 토지제도개혁에서 시작하여 농산물 가격·유통개혁을 추진한 것이다. 급진적인 개혁을 실시할 경우 오히려 농업 생산력이 훼손되고 농산물 유통시장의 혼란을 초래해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토지제도를 개혁함과 동시에 수매가격을

제고하여 농업 증산을 유도하고 농민의 소득 증대를 실현할 수 있었다.

베트남에서는 입찰방식 생산계약제 도입하고 농산물의 생산계약제를 확대·실시하였다. 토지의 장기사용권을 인정하고 토지 사용권과 관련한 각종 권리의 행사를 인정하였다.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을 대폭 자유함과 동시에 합의가격이란 불합리한 가격을 폐지하고 시장메카니즘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베트남의 농업부문에서의 개혁은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었다.

체제유지형 사회주의국가의 농업개혁 과정에서 보듯이 농업개혁은 농촌의 생산조직 개편에서 출발해야 한다. 최하위생산단위를 개별농가단위로 구분하고 개별농가단위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이행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농가가 책임지고 농산물을 생산·판매하는 농가생산청부책임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개혁은 기초부문에서 출발하여 거시적인 부문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순서이다. 가격과 유통측면에서의 개혁은 농업생산부문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도 진정한 농업개혁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는 국유로 하되, 토지사용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운영하는 중국과 베트남의 공통적인 정책수단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분조에게 초과생산물에 대한 자유처분권을 허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제고를 위한 대폭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종합시장을 통한 거래가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가격은 국가의 통제범위 내에서 결정되고 있다.

북한의 농업개혁은 경제체제내의 변화(1단계)와 경제체제의 근본

적인 변화(2단계) 단계로 구분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단계에서는 현재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농업부문에서 경제 자율화와 시장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다. 협동농장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경영목표를 수익 창출구조로 전환하고, 농민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노동에 따른 분배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개인 소유의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 영농활동을 인정하며, 토지의 국가소유를 근간으로 농민의 토지사용권을 보장한다. 농산물 가격을 일정 범위 내에서 통제하되 가격 변화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시장가격 조절 기능이 양립하도록 한다. 농산물에 대한 국가의 공급체계와 시장거래를 병존하되 국가유통망을 통한 공급은 축소시켜 나간다.

경제제도와 경제체제의 변화를 수반하는 2단계에서는 토지사용권에 대한 각종 권리를 인정하고 사유재산권과 농민의 경제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배급제를 폐지하고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체계를 확립해 국가에 의한 독점적 공급체계를 경쟁체제로 전환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농산물 가격이 결정되는 단일가격체제가 정착하도록 한다.

2. 농업개혁의 과제

가. 소유형태의 개혁: 소유권과 이용권의 분리

북한 농업의 근본적 문제는 농업 집단화에 따른 토지의 국가 및 협동적 소유구조에서 출발한다. 이로 인해 농업부문에서는 인센티브가 결여되는 등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간 생산부진을 면하지 못하였다. 이외에도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부족과 주체농법과 같은 획일적 농업정책의 폐해에 따른 문제도 발생하였다. 북한에서 농업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은 집단농장체제의 개편을 의미한다고 해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농업부문에서는 극도로 저하된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소유형태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산수단의 소유는 농민의 가장 중요한 요구이고 실제로 영농의욕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북한 당국은 토지와 같은 핵심적인 생산수단을 농민의 요구대로 곧바로 사유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1998년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통해 사유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완성을 위해서 토지의 국가 및 협동적 소유는 더욱 공고하게 남아있다.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 경험과 성과는 북한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급진적 개혁보다 점진적 소유개혁을 통해 농업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개혁으로 인한 체제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비록 집단소유제에서 완전한 개인소유제로 이행할 수는 없었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실질적인 사유화를 이룰 수 있었다.

북한의 사회주의체제가 존속되는 조건에서 실질적인 사유화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협동농장체제에서 탈피해 가족청부제(개인농)로의 이행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적인 생산수단인 토지의 소유권과 이용권을 변화시키되, 먼저 협동농장의 토지를 개별농가에게 분배하고 토지의 장기 사용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후 토지의 사용과 관련한 각종 권리(매매, 양도, 상속 등)를 인정해 사용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와 같은 협동소유를 중심으로 소유권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협동농장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 가축, 농기계 등 영농에 필요한 생산수단을 개인에게 임대하거나 불하해야 한다. 토지(농지)의 소유권은 협동농장이 갖도록 하되, 개별농가에게 토지의 장기 사용권을 보장하고 점차 토지사용권에 대한 양도, 상속, 담보를 허용해야 한다. 협동농장은 대농기계, 주요 수송수단 및 보관시설은 협동농장이 소유하되 개인에게 임대 또는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 중소형 농기계의 경우에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나. 농가생산책임제(가족농)의 도입과 확대

북한은 농업 집단화를 통해 사유농(私有農)을 폐지함으로써 농민들의 능동성과 창의성을 결여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인민공사, 베트남의 합작사의 사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농민들의 근로의욕을 자극하고자 1966년 분조관리제를 도입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96년에 시행된

새로운 분조관리제 역시 진정한 의미에서 농민들의 동기유발을 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농장체제 하에서 농민들의 인센티브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분조관리제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분조의 규모를 더욱 축소하고 점차 개별농가를 최소단위로 하여 생산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로는 개별농가 단위의 생산계약제를 추진하거나 사회협동단체의 생산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개별농가단위의 경영체를 확립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될 것이다. 농가생산책임제를 도입하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개별농가가 주요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일시에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초기에는 이용권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용권의 보유기간을 장기화해 나가야 한다. 생산수단, 특히 토지의 장기간 사용이 가능해지면, 이용권과 관련한 각종 권리(임대차, 양도, 상속 등)를 인정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집단농장체제 하에서 농민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소속 농가에 경영상의 자주권을 부여하고 농가의 물질적 이익과 경영성 간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북한은 농업부문에서 생산책임제를 도입하고, 농가에 경영을 청구하는 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농업부문 생산책임제의 궁극적인 형태는 개별농가가 영농을 책임지는 가족농(가족청부제 또는 가족임대제)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가족농은 리 단위의 협동농장에 경영을 맡기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가족단위의 농가에 직접 경영을 맡기는 방식이다. 가족농제도는 집단농장의 토지를 개별농가에 분배하고 여기에서 나온 수입은 국가세수와 집단보유분을 제외한 후, 전부 개별농가에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생산조직의 개편과정(생산책임제의 도입과 확산)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집단소유로 하되 사용권은 농가에 배분해야 한다. 토지 사용권의 분배에 따르는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분배기준이 명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토지의 분배 기준으로는 노동력, 인구, 인구-노동력 등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서 인구수(또는 가족 내 노동력)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마을 단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토질이 서로 다른 토지를 분배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토질에 따라 적절히 안배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합리적이다.⁴⁹

토지사용권의 분배가 진행됨으로써 가족농제도는 개별경영의 적극성을 유도하여 생산을 크게 자극할 수 있다. 그렇지만 토지를 개별농가에게 작은 땅으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형식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영세경영의 문제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영세 소경영체제는 토지의 합리적 구획과 기계경작, 관개, 병충해 방제, 우량품종 채용 등에 있어 규모의 경영을 도모하는 데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업과 상품생산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이런 문제점은 향후 토지사용권 대여 등을 비롯한 토지사용권의 유동화를 통해 능력있는 농가에 토지사용권을 자연스럽게 집중시켜 기업농이 탄생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⁴⁹ 토질을 무시하고 균분하여 추첨으로 분배하는 방법, 토질을 계산하여 표준지를 채택한 후 토지를 분획하여 개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정해진 가격으로 분배하고 화폐로 보상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가 가능하다. 중국의 경우 253개 촌 가운데 76.5%가 이 원칙을 고수한 사례가 있다. 조명철·홍익표, 『중국·베트남의 초기 개혁·개방정책과 북한의 개혁방향』, p. 161; 박정동, “사회주의 농업체제 개혁에 관한 사례연구,” p. 296.

이런 가족농제도 하에서 작물 및 영농방법 선택, 잉여농산물의 처분 등을 농가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정부는 기술적·물질적 지원을 적절하게 배합하도록 한다. 집단기업, 사영(私營)기업, 개인기업 등을 허용해 농촌 노동력의 고용증대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방안도 적극 개발해야 한다. 개혁과정에서 도시로의 급격한 인구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경우 토지사용권을 회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수매가격뿐 아니라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을 인상시키고 농업생산 투입재의 가격인하 등과 같은 가격·유통면에서의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다. 수매가격의 인상

현재 북한에서 공식 유통경로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농산물의 국정가격(판매가격)과 농민들로부터 사들이는 수매가격과의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는 배급제를 유지하면서도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7·1조치를 통해 농산물에 대한 국가의 수매가격과 판매가격(국정가격)을 인상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두 가격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이 당시 국정가격은 거의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책정되었다.

7·1조치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의 경우 배급가격(국정가격)은 (농민)시장가격에 거의 육박하였다. 따라서 농산물가격의 이중구조(국정가격과 시장가격)에서 발생하는 농민의 ‘계획할당으로부터의 도피’ 경향은 이론적으로 거의 발생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만성적인 물자부족에 따라 7·1조치 당시 시장가격에

근접했던 배급가격(국정가격)은 이후 바로 시장가격과 큰 폭으로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2002년 이후 북한의 농산물 수매가격은 7·1조치 이후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 다만 쌀의 경우 판매가격(국정가격)이 아주 미세하게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국정가격(수매가격과 배급가격)은 고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주요 곡물(쌀, 옥수수)의 시장가격은 7·1조치 이후 2005년까지 3년 반 동안 거의 10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식량사정(수급구조)를 감안하면 수매가격을 인상하여 생산을 자극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이다. 국정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이중가격체계 하에서 농민은 국가수매량을 줄이고 (농민)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증대할 수 있다. 수매가격과 시장가격과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국가수매를 회피하려는 경향은 더욱 강해진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배급체계 하에서 정부가 국가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즉, 수매가격을 인상해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농민이 국가 주도의 공식 유통시스템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가격의 이중구조체제 하에서 농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격정책의 핵심은 수매가격의 인상을 통해 수매가격이 시장가격에 근접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매가격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재정보조가 필수적이다. 개혁 당시 중국의 경우 수매가격은 배급가격보다 높았으나 잠재적 균형가격보다는 낮은 수준에 있었다. 가격보조에 따른 재정부담이 존재했지만 수매가격 인상을 통해 공급부족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과제였고, 개혁 당시의 중국은 재정상황이 그다지 나

빼지 않아 가격정책을 통한 생산자극에 나설 수 있었다.

북한은 1990년대의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재정구조는 극히 취약한 상태이다. 7·1조치를 시행한 주된 목적 중 하나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었다. 북한이 가격정책(수매가격 인상)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취약한 재정상황은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한편 당장 정부의 재정부담 없이 농산물 수매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수매가격의 인상과 함께 배급가격을 동시에 인상한다면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농산물 배급가격의 인상은 여타 국정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된다. 그 결과 수매가격 인상에 따른 농민들의 소득 증대 기회는 줄어들게 된다. 수매가격 인상을 통해 농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다.⁵⁰

라. 가격 자율화를 통한 단일가격제도의 확립

시장경제 하에서 가격은 시장의 수급을 조절하는 분배기능이 강한 반면,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서는 주로 통제기능을 담당한다. 농업개혁 과정에서는 이런 가격에 대한 국가의 통제기능을 축소하면서 가격의 시장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개혁의 일환으로 농산물 수매가격을 시장가격에 근접하도록

⁵⁰ 북한은 농산물 초과생산분에 대해 시장에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공급량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초과생산물을 시장가격과 동일(근접)한 가격으로 초과수매하도록 함으로써 농민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초과수매를 위한 재정확보가 필수적이다.

서서히 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격 자율화를 통해 농산물 수급을 시장 기능에 맡기기 위한 것이다.

가격개혁은 농산물에만 한정되어 추진될 수는 없다. 농산물 가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가격에서 국가가 가격을 결정하는 국가통제가격체계를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중가격체계 하에서 국유기업이나 집단경영체는 효율화를 추구하기 어려우므로 모든 분야에서 단일가격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즉, 모든 상품의 이중가격과 왜곡된 상대가격체계를 단일가격체제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의 가격 결정권을 하위기관 및 기업에 이양하고 하부단위의 가격결정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⁵¹ 또한 가격 관리의 법제화를 통해 가격경쟁질서를 제도화해 나야 한다. 초기에는 국가결정가격, 국가지도가격, 협의가격, 시장가격, 상한가격 등 다양한 형태의 가격을 병행 운용하면서 점진적으로 가격자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수급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자율가격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서는 가격 결정 과정에서 정부나 기업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의 자율 가격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식량 등 국민경제생활과 직결된 품목은 급격한 가격자율화 정책에서 제외하고 상한가 설정 등을 통해 유통마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지금의 강제수매제도에서 시장메카니즘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⁵¹ 가격결정의 분권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북한 당국은 가격의 일원화 원칙에서 탈피하여 ‘중앙가격제정위원회’의 가격결정권을 지방의 ‘가격제정국’과 기업소내 ‘판매과’에 대폭 이양하고, 중앙가격제정 당국은 지도가격만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당국은 수매 품목수를 줄이고, 수매 품목의 가격 수준은 시장가격 수준과 연동하면서 상향 조정해 나가야 한다. 초과수매분에 대해서는 개혁의 초기 단계부터 거의 시장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다. 국가공급가격과 시장가격을 일치시키며 지도가격 또는 시장의 가격 상한제(한도가격)를 폐지하고 수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동시에 대부분의 농산물이 시장을 통해 거래되도록 단계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농산물의 이중가격이 사라지고 왜곡된 상대가격체제를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단일가격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농업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마. 시장 중심의 유통체제로 전환

사회주의 국가의 농업개혁 경험은 농산물 유통체계(시스템) 개혁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초기 개혁 과정에서 농업개혁의 초점을 생산에 두고 농업생산체제를 우선 개혁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농가소득의 악화 및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 확대라는 부작용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농산물 가격정책 개혁을 통해 농업생산체제 개혁을 보완하고, 이어서 농산물 유통체계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의 농업개혁은 3단계(농업생산체제 개혁 → 농산물 가격정책 개혁 →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혁)를 통해 확대되어 왔다.

북한 농산물 유통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농산물 유통개혁의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⁵² 중국은 자유시장

⁵² 권태진 외, 『북한의 농업부문 개혁·개방 정책과 남북협력』, p. 255.

을 포함한 다양한 유통경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영상점의 비효율을 견제하였고, 이에 따른 집시(集市)무역의 급격한 성장으로 농산물 유통체계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북한도 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업적 유통망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농산물 시장이 개방된 이후에도 농민은 영세한 경영규모, 시장정보 수집 능력의 부족으로 시장에서 협상력 부족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농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협동조합 결성 등 조직화도 필요하다.

7·1조치 이후 국가유통망과 사적유통망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북한의 농산물 유통체계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공식 유통망인 국가유통망의 위축과 사적·비공식 유통망인 농민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국영상점과 시장사이에 존재하는 가격 격차는 북한 당국이 의도하는 국가유통망을 위주로 한 사회주의 유통체계의 확립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가유통망의 물적 공급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농민시장 및 종합시장의 기능을 일시에 약화시킬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국가에 의한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별기업 또는 개인에 의한 유통체계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현재와 같은 도매상업, 소매상업, 사회급양, 수매의 형태로 분화된 상업 형태를 점차 시장을 통한 유통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국영상점을 통한 농산물 유통망을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체계로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 상업유통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민(종합)시장을 활성화시켜 국영유통망과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민(종합)시장의 물적 유통기능을 강화하고 공식적인

시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유통시스템의 전환 과정에서 농산물에 대한 정부의 강제적 일괄 또는 할당 구매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생산자와의 계약구매 또는 시장 구매제도로 전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동시에 식량 등에 대한 배급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시장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유통시스템의 전환 과정에서 개혁 초기에는 국영상점망과 협동상점망을 적절히 활용하여 유통마진을 줄이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영유통망을 축소하고 시장 중심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농민) →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소비자에 이르는 효율적인 유통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상업적 유통채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와 함께 농산물 유통시설의 보강과 물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우선 구매사업소, 농산물도매소 및 소매소 등 중앙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농산물 유통시설을 새로운 기능에 맞도록 보강하고 전국적으로 골고루 배치한다. 농촌지역에도 시장을 상설화하고 시장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저장, 운송 등 농산물 물류시설을 확장함으로써 물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농산물의 수확 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송·저장 시설을 확보하는 동시에 농산물 가공 산업을 육성하는 일도 필요하다. 즉, 각종 유통시설의 확충을 통해 근대화된 시장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요 농자재의 국가 공급은 확대하되 기본적으로 농자재의 계획적 분배제도에서 탈피하여 시장을 통한 농자재 유통체계를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과거 북한이 대안의 사업

체계에 의한 영농자재 조달체계를 상업적 조달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농업기술 지도, 농업용수 공급, 유통시설 및 유통조성 기능 등 공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북한 농업개혁의 한 축인 농산물 유통개혁은 농산물 유통과 관련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이 관건이다. 개인의 시장 참여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시장에서 영업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하고 상품의 거래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국가에 의한 수매제도와 분배제도를 축소·폐지하고, 시장을 통해 개별 경제주체의 자율적 시장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VI

결론

지난 반세기 동안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해 온 북한에서도 7·1 조치를 전후하여 농업부문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집단영농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서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생산부문에서는 집단주의를 완화하고 책임영농을 유도하기 위해 협동농장과 농민에게 자율권을 확대해 왔으며 일부지역에서는 개인경작을 시범 실시하였다. 분배측면에서는 영농 인센티브를 제고하기 위해 분조관리제를 확대·실시하고 실적분배원칙을 강화하였다. 가격·유통측면에서는 국정가격을 현실화하고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개편하였다.

개혁조치에 따라 북한 농업의 생산, 분배, 가격·유통부문에서는 긍정적인 현상과 부정적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영농의욕이 제고됨에 따라 농업생산이 다소간 증가한 반면 농장과 농민의 이기주의가 발현되고 있다. 다른 부문에 비해 농업부문과 농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지만 농업부문 내에서는 협동농장간, 농민간의 소득 격차는 커지고 있다. 상업유통망이 확대되어 농산물의 시장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농산물 가격을 비롯한 전반적인 물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 농업부문의 개혁은 중국과 베트남에서 추진되어 온 농업개혁과 비교한다면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농가생산책임제를 도입하면서 토지사용과 관련한 각종 권리를 인정하였고, 농산물 수매가격을 인상하고 시장의 수급을 통한 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가격·유통개혁을 추진하였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개혁의 초기 단계에 인민공사를 해체하여 집단영농체제를 폐지하였다.

베트남도 큰 틀에서 본다면 중국과 유사한 농업개혁을 추진해

왔다. 입찰방식 생산계약제의 도입을 시작으로 농산물의 생산계약제를 확대·실시하고 토지의 장기사용권을 인정한 이후 이와 관련한 각종 권리 행사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을 자유화하고 시장메카니즘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을 도입하였다. 중국과 베트남의 농업개혁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는 집단부문의 해체 여부이다. 베트남에서는 농업에서의 집단부문이 축소되어 왔지만 여전히 해체되지 않고 남아있다.

향후 북한에서의 농업개혁은 체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북한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고 토지의 국가소유에 대해서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 비해서도 가장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중국의 사례에서 나타난 집단농장의 해체와 같은 체제의 급진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농업개혁은 북한 당국이 바라지 않는 개혁방향일 것이다. 오히려 베트남의 사례에서처럼 집단부문의 점진적인 축소로 농업개혁이 진행되는 것이 북한 내부의 반발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토지 소유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체제의 전환이 진행되는 시점으로 미루고 우선 북한은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해서 개혁을 진행시켜야 한다. 농민에게 토지사용권을 부여하고 영농에 필요한 주요 농자재를 모두 불하해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토지사용권의 보장과 이에 따르는 각종 권리의 처분권이 개인에게 허용되고, 기타 농업 관련 생산수단의 개인소유가 허용되어야 만 실질적인 농업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개인영농제를 발전시켜 농가생산책임제가 모든 협동농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야 한다.

토지제도 및 농업생산제도의 개혁과 함께 농업 관련 가격·유통부문에서의 개혁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농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구매가격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인상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구매가격 인상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이 문제는 전반적인 북한의 경제상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 다만 북한이 미사일, 핵문제 등을 국제사회와의 대화로 풀어나간다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농업개혁은 농민의 소득 향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의 시장 거래가 계속 확대되는 방향으로 농산물 유통체계가 전환되어야 한다. 점진적으로 국가유통망을 축소하고 상업유통망을 확대해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수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농산물 유통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농산물 가격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하고 단일가격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북한의 농업부문 개혁을 위해서는 생산수단의 소유권과 이용권의 분리, 농가생산책임제의 도입과 확산, 구매가격의 인상, 가격자율화를 통한 단일가격제도의 확립, 시장 중심의 유통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과제들이 북한 농업부문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북한이 농업부문의 희생과 생산성 증대를 추구한다면 최소한 이런 방향의 농업정책을 구사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권성태·박완근. 『베트남의 경제개혁 추이와 시사점』. 서울: 한국은행, 1999.
- 권태진 외. 『북한의 농업부문 개혁·개방 정책과 남북협력』.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12.
- 김영운·최수영.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김운근·김영훈·이일영. 『사회주의농업의 체제전환과 북한농업 전망』.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 박순성. 『북한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이일영. 『북한 농업개혁의 현황과 전망』. 서울: 통일교육원, 2004.
- 조명철·홍익표. 『중국·베트남의 초기 개혁·개방정책과 북한의 개혁방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12.
- 중국 국가통계국 편. 『중국통계연감』. 북경: 중국통계출판사, 1983~1986.
-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대전: 통계청, 2005.
- Tho, Tran Van. 『ベトナム經濟の新展開: 工業化時代の始動』.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1996.

2. 논문

- 권태진. “북한의 농업실태와 농업발전 전략.” 『북한의 경제개혁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농업협력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 국제세미나 자료집, 2003. 3. 11.
- 김종덕. “중국 농업 생산 체제의 개혁에 관한 연구.” 『사회와 역사』. 제54집, 1998.
- 남성욱. “2002년 북한의 임금과 물가인상에 따른 주민 생산·소비 행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15권 2호, 2003년 하반기.
- 박정동. “사회주의 농업체제 개혁에 관한 사례연구.” 『비교경제 연구』. Vol. 8, No. 1, 2000.
- 이일영. 『1980년대 중국의 농업개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학위 논문. 1994.
- Lin, Justin Yifu. “Rural Reform and Development.” Garmaut, Ross and Liu Guoguang, ed., *Economic Reform and Internationalization*. Crows Nest: Allen and Unwin.

3. 기타자료

FAO/WFP. *Special Report: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2 November 2004.

“북한 경제정책 설명.”(일본 방문 중 김용술 북한 무역성 부상이 비공개 세미나(2002년 9월 2일)에서 강연한 내용) 『KDI 북한경제리뷰』. 제4권 제10호, 2002.

조선로동당출판사. “가격과 생활비를 전반적으로 개정한 국가적 조치를 잘 알고,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앞당기자(2002년 7월).” 『KDI 북한경제리뷰』. 제5권 제1호, 2003. 1.

『조선신보』.

『연합뉴스』.

『조국』.

<www.goodfriends.or.kr>.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험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 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핵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핵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 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 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흙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턱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학술회의총서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 · 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 · 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 · 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 · 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협동연구총서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 · 중국 · 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 · 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I)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I)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11-01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2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연례 정세보고서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 비매품 ◆

통일 정세분석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 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C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운,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망: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운,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운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운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운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민국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KINU 정책연구 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